





발행: 경상남도 편집: 소통담당관실(055-211-2065, 행정 2065)

# 고 시

# 공 고

제2023-112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1126호	「2023년 찾아가는 안전체험박람회 운영」수행단체 공모(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1127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1128호	심사결과에 따른 당선작 등 선정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1129호	심사결과에 따른 당선작 등 선정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1130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13
제2023-113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공고)
제2023-1132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하천기본계획수립(안) 하천구역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1133호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113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공고)
제2023-1135호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17
제2023-113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공고)
제2023-113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공고)
제2023-1138호	공사 제한입찰경쟁 공고(긴급)(G2B 공고)
제2023-113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1140호	매장문화재 공고
제2023-114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1142호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21

제2023-1143호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결과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1144호	경남 120 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위원
	모집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1145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114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114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114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1149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G2B 공고)

# 알 림

창원시 고시 제2023-99호	창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지형도면 고시 28
창원시 공고 제2023-1037호	창원도시계획시설(감계2근린공원 시설 개선공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창원시 공고 제2023-1088호	창원도시계획시설(흰돌메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64
진주시 공고 제2023-1599호	진주도시계획시설(소로문산2-11호선)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66
통영시 공고 제2023-1090호	통영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1차, 3차부지 공사완료 공고
사천시 고시 제2023-125호	사천 도시계획시설(시설:종합의료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70
양산시 고시 제2023-161호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계획도로 소1-93, 소1-12호선 개설
	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72
양산시 고시 제2023-164호	양산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ㆍ74
양산시 고시 제2023-165호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실시
	계획인가 고시 75
양산시 공고 제2023-1668호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북정9근린공원 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80

함안군 고시 제2023-57호	함안군관리계획(시설-도로:소로3-101호선)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
日已记 上午 7112020 07上	도면 고시
산청군 고시 제2023-99호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85
산청군 고시 제2023-103호	산청군관리계획(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경한 고기 제2025 100호	·····································
함양군 고시 제2023-106호	화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9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함 8 군 고시 세2025-100호	와한 단계복사실도도(또도)~13오선) 개설공사 설시계복 한가 고시 
거시나 나무 바퀴취 커서 그이 코크 케이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	
크리카드 사기시키니 사이 코드 레이스	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공고 제20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	
	공사 관급자재 — 냉난방기](G2B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	)23-175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G2B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	)23-176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G2B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	)23-177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G2B 공고)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2	3-12호 2023년 예술창작공간 입주작가 모집
	(도 홈페이지 공고)
경남대표도서관 공고 제2023-1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경상남도축산연구소 공고 제2023-	7호 제4차「기축분뇨 부숙퇴비」공급 재공고
	(도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조례 제5400호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96
경상남도 조례 제5401호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97
경상남도 조례 제5402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00
경상남도 조례 제5403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3	73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106

고 시

# ◉ 경상남도 고시 제2023-255호

# 경남 고성 대포 마을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변경)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3년 6월 8일

# 경 상 남 도 지 사

#### 1. 인가내용

사 업 으	] 목 적	경남 고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삼산면 미룡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시 설 의	명 칭	경남 고성 대포 마을하	수도				
기어기체키	주 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	유 성내로 130				
사업시행자	성 명	고성군수					
기어기체제기	위 치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일원					
사업시행지	처리장면적	1,011 m²					
시 설	시 설 용 량		처리공법	APB-SBR공법			
처리	구역	0.204km²					
사 업 시	행 기 간	2023. ~ 20	2023. ~ 2025.(사업 시행일로부터 30개월간)				

#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시설명	토지 소재	지	지목	대장상의 면적(m²)	편 입 면적(m²)	소 유 자			
	군, 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고성군 대포마을하수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1178-12	답	1,011	1,011	_	경남 고성군		
함	계	-	-	1,011	1,011		01 01		

※ 인가와 관련한 관계도서 열람기관 :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055-670-4424)

제2616호 2023, 6, 8,(목)

# ● 경상남도 고시 제2023-257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전일반산업단지 외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 2023년 6월 8일

## 경상남도지사

####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m³)	기점	중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국도	79호	의령 ~ 창령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59,923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7-7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547-3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화천리	1.34
변경	국도	79호	의령 ~ 창령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60,700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7-7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547-3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화천리	1.34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동전일반산업단지 외 진입도로 확장공사 지적확정측량, 면적정정 및 추가 편입 등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변경

나.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 03. 24 ~ 2023. 12. 31.

다. 사업시행자 : 창원시장(산업입지과장)

####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79호	노선명	의령~창령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 도로구 ○위 치 - 시점: 창원시 - 종점: 창원시	의창구 북면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구조의 파손병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1
비고	○도로구역 결정(변	경)에 따른 접	]도구역(변경) 지정	]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2 참조

4. 도로구역(접도구역)과 지적선이 표시된 지형도면 : 붙임3 참조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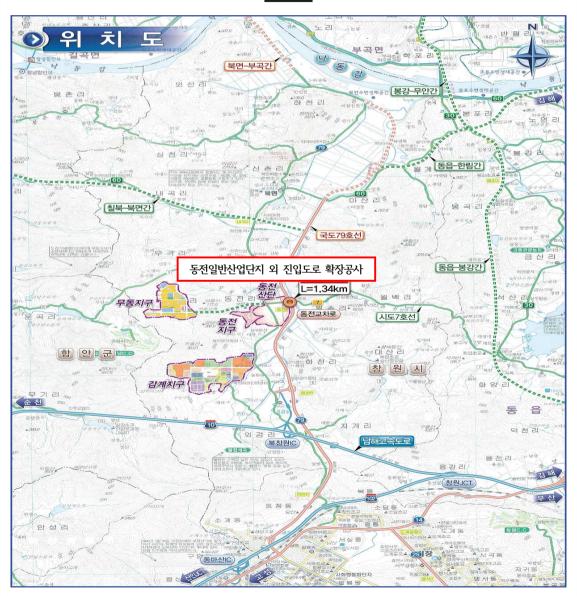
나. 열람장소 : 경상남도청 도로과(055-211-2983)

창원시청 건설도로과(055-225-4541)

창원시 의창구청 안전건설과(055-212-4136)

#### ■ 붙임1 : 위 치 도

# <u>위 치 도</u>



# ■ 붙임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토 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 (r	면적 n²)		소 유 자		관 계 인		w) =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시속	( m²)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 비고
i	· 합계	66필지	74필지			59,923	60,700						
1	동전리	7-7	7-7	도	36.0	36.0	36.0	공	창원시				
2	동전리	7-9	7-9	도	740.0	740.0	740.0	공	창원시				
3	동전리	8-5	8-5	전	25.0	25.0	25.0	공	창원시				
4	동전리	8-6	8-6	전	29.0	29.0		하○우	북면 동전리 287				편입제외
5	동전리	9-4	9-4	전	17.0	17.0		조O진	마산합포구 동서동3길 16, 901호(신포동1가, 신우희가로밀리온)				편입제외
6	동전리	23-24	23-24	구	941.0	941.0	941.0	국	농림축산식품부				
7	화천리	647-27	647-27	도	4,289.0	4,289.0	4,289.0	공	창원시				
8	화천리	879-51	879-51	전	167.0	167.0	167.0	국	국토교통부				
9	화천리	879-49	879-49	천	1.0	1.0	1.0	국	국토교통부				
10	화천리	879-50	879-50	천	1,116.0	1,116.0	1,116.0	국	국토교통부				
11	화천리	648-26	648-26	도	19,496.0	19,496.0	19,496.0	공	창원시				
12	화천리	648-32	648-32	답	91.0	91.0	91.0	국	국토교통부				
13	화천리	655-38	655-38	답	18.0	18.0	18.0	국	국토교통부				
14	화천리	648-20	648-20	대	93.0	93.0	93.0	국	국토교통부				
15	화천리	655-37	655-37	대	411.0	411.0	411.0	국	국토교통부				
16	화천리	647-32	647-32	구	36.0	36.0	3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7	화천리	655-14	655-14	도	134.0	134.0	134.0	공	창원시				
18	화천리	655-13	655-13	도	55.0	55.0	55.0	공	창원시				
19	화천리	657-5	657-5	답	97.0	97.0	97.0	국	국토교통부				
20	화천리	879-52	879-52	천	121.0	121.0	121.0	국	국토교통부				
21	화천리	657-4	657-4	도	41.0	41.0	41.0	공	창원시				
22	화천리	657-2	657-2	도	76.0	76.0	76.0	국	국토교통부				
23	화천리	657-6	657-6	대	5.0	5.0	5.0	국	국토교통부				
24	화천리	648-31	648-31	도	494.0	494.0	494.0	국	농림축산식품부				
25	화천리	607-23	607-23	답	154.0	154.0	154.0	국	국토교통부				
26	화천리	607-24	607-24	답	26.0	26.0	26.0	국	국토교통부				
27	화천리	607-28	607-28	구	2.0	2.0	2.0	국	농림축산식품부				
28	화천리	607-27	607-27	도	9,278.0	9,278.0	9,278.0	공	창원시				
29	화천리	647-28	647-28	전	4.0	4.0	4.0	국	국토교통부				
30	화천리	647-31	647-31	전	102.0	102.0	102.0	국	국토교통부				
31	화천리	647-29	647-29	도	13.0	13.0	13.0	국	농림축산식품부				
32	화천리	647-30	647-30	구	12.0	12.0	12.0	국	농림축산식품부				
33	화천리	648-23	648-23	답	145.0	145.0	145.0	국	국토교통부				

일련	토 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 (r	면적 n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시숙	(m²)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117
34	화천리	648-24	648-24	답	90.0	90.0	90.0	국	국토교통부				
35	화천리	648-25	648-25	구	19.0	19.0	19.0	국	농림축산식품부				
36	화천리	649-13	649-13	답	390.0	390.0	390.0	국	국토교통부				
37	화천리	649-14	649-14	도	37.0	37.0	37.0	국	농림축산식품부				
38	화천리	649-15	649-15	구	16.0	16.0	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39	화천리	652-13	652-13	답	475.0	475.0	475.0	국	국토교통부				
40	화천리	652-14	652-14	구	11.0	11.0	11.0	국	농림축산식품부				
41	화천리	615-2	615-2	답	163.0	163.0	163.0	국	국토교통부				
42	화천리	615-18	615-18	답	579.0	579.0	579.0	국	국토교통부				
43	화천리	615-19	615-19	답	192.0	192.0	192.0	국	국토교통부				
44	화천리	615-20	615-20	답	18.0	18.0	18.0	국	국토교통부				
45	화천리	615-21	615-21	도	11.0	11.0	11.0	국	농림축산식품부				
46	화천리	615-22	615-22	구	3.0	3.0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47	화천리	655-39	655-39	도	126.0	126.0	126.0	공	창원시				
48	화천리	658-33	658-33	도	58.0	58.0	58.0	국	국토교통부				
49	화천리	658-32	658-32	전	25.0	25.0	25.0	국	국토교통부				
50	화천리	658-29	658-29	도	23.0	23.0	23.0	국	농림축산식품부				
51	화천리	658-31	658-31	구	24.0	24.0	24.0	국	농림축산식품부				
52	화천리	659-21	659-21	답	506.0	506.0	506.0	국	국토교통부				
53	화천리	659-20	659-20	답	13.0	13.0	13.0	국	국토교통부				
54	화천리	659-23	659-23	구	56.0	56.0	56.0	국	농림축산식품부				
55	화천리	660-32	660-32	답	446.0	446.0	446.0	국	국토교통부				
56	화천리	660-35	660-35	답	12.0	12.0	12.0	공	경상남도				
57	화천리	660-27	660-27	답	5.0	5.0	5.0	공	경상남도				
58	화천리	660-34	660-34	구	595.0	595.0	595.0	국	농림축산식품부				
59	화천리	648-34	648-34	도	10,297.0	10,297.0	10,297.0	공	창원시				
60	화천리	607-30	607-30	구	87.0	87.0	87.0	국	농림축산식품부				
61	화천리	547-3	547-3	도	6.0	6.0	6.0	공	창원시				
62	화천리	658-28	658-28	도	155.0	155.0	155.0	국	농림축산식품부				
63	화천리	658-30	658-30	구	153.0	153.0	153.0	국	농림축산식품부				
64	화천리	659-22	659-22	도	7,000.0	7,000.0	7,000.0	공	창원시				
65	화천리	660-28	660-28	답	46.0	46.0	46.0	공	경상남도				
66	화천리	660-36	660-36	답	21.0	21.0	21.0	공	경상남도				
67	화천리		648-38	도	19.0		19.0	공	창원시				금회추.
68	화천리		647-33	도	3.0		3.0	공	창원시				금회추:
69	화천리		648-39	도	14.0		14.0	공	창원시				금회추:

# 경 남 공 보

제2616호 2023. 6. 8.(목)

일련 번호	토 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 (r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변경	7	(m²)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평 정	주 소	권리 관계	-1,12
70	화천리		879-35	천	89.0		14.0	국	환경부					금회추가
71	화천리		879-37	전	910.0		219.0	국	환경부					금회추가
72	화천리		879-48	천	1,789.0		134.0	국	국토교	통부				금회추가
73	화천리		648-40	도	98.0		98.0	공	창원	시				금회추가
74	화천리		648-41	도	292.0		292.0	공	창원시					금회추가
75	화천리		615-3	답	25.0		25.0	국	국토교통부					금회추가
76	화천리		647-34	도	5.0		5.0	공	창원	시				금회추가

# ■ 붙임3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 경상남도 고시 제2023-258호

## 예안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에서 시행 할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주동리 일원의 예안 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2023년 6월 8일

##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예안지구 배수개선사업

2. 위 치: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주동리 일원

#### 3. 사업목적

○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를 격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 등 영농환경 개선

#### 4. 사 업 량

- 배수장 2개소 (예안2배수장 Q=4.0m³/s, 예안2배수장 Q=1.00m³/s)
- 배수로 3조 정비 L=1.98km
- 매립 2.1ha

#### 5. 사 업 비

○ 10,928,010천원

#### 6. 사업기간

 $\circ$  2022. 6.  $\sim$  2026. 12.

#### 7. 사업효과

가. 직접효과

- 영농환경개선 및 농경지 침수방지로 농가소득 증대
- 농경지 건답화로 노동생산성 향상 및 토지 이용률 증대

제2616호 2023, 6, 8,(목)

#### 나. 간접효과

- 농산물 증산 등 지역경제 발전효과

####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장

# 9.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변경) : 붙임

#### 10. 관계도서의 비치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전화 055-320-4883)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32		면적	4				관계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 목	공부상 면 적 (m²)	편입 면적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고
1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337-21 (1337-17)	답	91 (1,038)	91	국 (기획재정부)					
2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337-19 (1337-6)	답	3 (430)	3	국 (기획재정부)					
3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337-22 (1337-18)	답	1,218 (2,361)	1,218	국 (기획재정부)					
4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337-20 (1337-7)	답	413 (926)	413	국 (기획재정부)					
5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337-12 (1337-12)	답	1,865 (1,865)	445.0	국 (환경부)					
6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337-14 (1337-14)	답	167 (167)	1.0	국 (환경부)					
7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294-313 (1294-313)	구	461,337 (461,337)	31.0	국 (환경부)					
8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99 (99)	천	24,063 (24,063)	18.0	국 (농림축산 식품부)					
9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352-2 (352-2)	답	377 (377)	377.0	문병순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503, 702동 902호 (구서동,구서동롯데캐슬골드)				
10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352-3 (352-3)	구	1,131 (1,131)	353.0	국 (농림축산 식품부)					

# 경 남 공 보

제2616호

2023. 6. 8.(목)

		지번 기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지번)	지 목	공부상 면 적 (m²)	편입 면적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고
11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352-7 (352-7)	유	1,177 (1,177)	1,177.0	문병순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503, 702동 902호 (구서동,구서동롯데캐슬골드)				
12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352-6 (352-6)	잡	2,724 (2,724)	361.0	기획재정부					
13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335-4 (335-4)	답	2,684 (2,684)	9.0	정미영	부산 서구 대영로 73번길 39, 2동 506호 (동대신동2가, 삼익아파트)				
14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48-5 (48-5)	답	1,365 (1,365)	3.0	주경선	김해시 삼정동 267-7 유한미소안아파트 101동 802호				

공 고

# ◉ 경상남도 공고 제2023-1130호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처분사전통 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2023년 6월 8일

# 경 상 남 도 지 사

1. 건 명: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령: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3. 공고방법: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3. 6. 8.(목) ~ 2023. 6. 22.(목)(15일간)

※ 농협 289-01-007146 [예금주 : 경남도(세외수입)]

\* 의견제출기간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 800,000원

#### 5. 공시송달 대상자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 <del>용</del>	당사자	주 소	과태료 금액 (원)	반송 사유
앞)경북98아82*1 뒤)경북83아72*6	2023. 5. 9. 11:31분경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지방도 1008호선 상	폭 1.00미터 초과	김*환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6*, 14동 1*05호	1,000,000	폐문 부재

6. 의견제출기한 : 당사자는 의견제기 시 의견제출서 서식(붙임 1)으로 2023. 7. 12.(수)까지 팩스 (055-254-4119)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의견이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7. 과태료는 고지서, 인터넷 뱅킹,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ww.wetax.go.kr),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 >

-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까지로서, 발부일은 일수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되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의 경우 익일까지) 이내에 사전고지서를 발부한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2. 제1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귀하께서 과태료 부과 기관에 해당 위반행위가 제3자에 의해 기인된 사실(차량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화물적재 관리의무 위반, 화주·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등의 운행제한 위반 지시·요구 등)을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절차상 대기상태로 전환되며, 귀하의 신고 내용이 사실로 규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제1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상의 산출근거에 기재된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은 금액(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상의 납기 내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과태료의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 4. 귀하께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서 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부과 기관에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과태료의 감경은 과태료 체납 사실이 없는 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개 있는 경우라도 제3항에 따라 자진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마. 미성년자
- 5.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귀하께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때에는 과태료에 대한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없으면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및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과태료의 강제 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체납 등의 정보 제공, 관허사업의 제한, 감치(監置) 등의 조치가 처해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1)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2) 총중량 및 축하중 관련 운행제한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 나. 「도로법」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이 허가받은 사항(총중량, 축하 중, 폭, 높이, 길이)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도로법 시행령」제79조제3항 및 제81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운행제한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라. 「도로법」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도로법」제1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2) 「도로법」제1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에게 과 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 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50 70 100			
타.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 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80	120	160	
파.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150	220	300	
하.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 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 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30			
거.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 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50			
너.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100			

※ 법 제7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서

1. 진술인의 인적사항

가. 사 업 체 명 :

나. 성 명: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주 소:

마. 전화 번호:

2. 통지받은 위반행위

3.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진술 내용

위 진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술 인 : (서명 또는 인)

# ● 경상남도 공고 제2023-1135호

#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4항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통지하였으나, 폐 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의견 제출기한 중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예정된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 립니다.

#### 2023년 6월 8일

## 경상남도지사

○ 공고기간 : 2023년 6월 8일 ~ 2023년 6월 22일[15일간]

○ 공고방법 : 공보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 게시

○ 공고의 내용 :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박\*수]

1. 예정된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									
	대표자	박	*수							
2. 당사자	주 소	경남	경남 통영시 항북길 12-9							
	업 종	복育	복합건축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b>자체점검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음</b>									
	4. 처분하고자 과태료 2,000,000원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감정(1,600,000원)									
5. 법적근거 조 문 내				치 및 관리에 관 치 및 관리에 관						
		-1ì	기관명	통영소방서	부서명	예방안전과	담당자	정 인 환		
7 이커 쾌.	ž	제 출 처	주소	경남 등	통영시 죽림4	로 49	전화번호	055-640-9254		
1. 커선 세1	7. 의견 제출		전자우편	manddang999@korea.kr		ea.kr	FAX	055-640-9239		
	,	기 한		2023년 7월 7일 까지						

#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 1. 소방행정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귀하께서는 소방관계법령을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에 과태료 부과 처분 예고서와 같이 의견제출서를 보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اد اد اد اد	성명		박*수					
위반대상	주소	경남 통영/	영남 통영시 항북길 12-9					
위반사항	위반내용	자체점검 여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음					
717778	적용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학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과태료금액	금2,000,000원 (금이백만원)		제출기한	2023. 7. 7.(금)까지				

- 3. 기타 사항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20/100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제2조에 따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기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1가지만 적용가능
- 다. 상기사항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민원실(640-92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8일

# 통영소방서장

제2616호

2023. 6. 8.(목)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문	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적차법」	제 <i>2</i> 7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의겨옥								
제출합니다.	1127 - 1170	, ,,,,,,,,,,,,,,,,,,,,,,,,,,,,,,,,,,,,,									
. —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16호 2023, 6, 8,(목)

# ● 경상남도 공고 제2023-1140호

# 매장문화재 공고

#### 1. 관련근거

- ㅇ「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 2.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6-1 일원 등 2개소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해당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8일

# 경상남도지사

유적명 (발굴허가번호)	유물명 및 수량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사기관	보관처
김해 양동리 고분군(1차) (1990-0059)	고배 등 2,191점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6-1 일원	1990.11.121991.12.24	동의대학교 박물관	동의대학교 박물관
밀양 경남진로교육원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2023-0403)	백자저부 등 141점	경남 밀양시 교동 560-1	2023.4.72023.5.16	(재)두류문화 연구원	(재)두류문화 연구원

#### - 제 출 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 055-211-4575~6/팩스 055-211-4559/담당자 이메일 : ksh7777@korea.kr)

# ● 경상남도 공고 제2023-1142호

##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경상남도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23.8.31.)되어 「건설기술진흥법」제5조 및「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차기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 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3년 6월 8일

# 경 상 남 도 지 사

**1. 모집기간 :** 2023. 6. 19.(월) 09:00 ~ 7. 14.(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 경남도청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에서 후보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e-메일(2youngmi@korea.kr)로 제출

※ 반드시 개인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편 및 팩스 신청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 3. 모집내용

가. 모집분야 및 인원 : 21개 전문분야 248명

합 계	도시계 획	도로	철도 궤도	교통	수자원	상하 수도	항만 해안	토목 구조	토질 지질	토목 시공	건축 계획
	5	12	2	6	13	20	5	18	24	23	15
248명 (21개분 야)	건축 시공	건축 구조	건축 설비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정보 통신	환경	폐기물	조경	건설 안전	
	16	9	9	11	13	7	10	3	10	17	

※ 위원 공개모집 결과, 신청인원에 따라 분야별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나. 모집권역: 경남, 부산, 울산지역 내 직장 소재 또는 거주자에 한함

다. 주요임무

- 1) 건설공사(100억 원 이상) 설계의 타당성, 공사기간 적정성, 건설사업관리시행 적정성 심의
- 2) 대형·특정공사 기술형 입찰방법, 실시설계 적격자의 결정방법 등 심의

2023. 6. 8.(목)

제2616호

- 3)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 대상 용역의 기술평가방법, 입찰공고안 적정성 심의
- 라. 위원임기: 2023. 9. 1. ~ 2025. 8. 31. (2년)
- 마. 신청자격
- 1)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및 시·군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 2) 건설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 3)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 4)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5) 해당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6) 해당 분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7) 그 밖의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바. 유의사항: 선정된 위원들은 임기동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제8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4. 기타 참고사항

-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는 「별첨1」의 등록신청서를 「별첨2」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며, 신청 서 작성 미흡(사진누락, 내용 불분명 등)과 증빙서류 미제출시 위원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위원 선정은 전문분야별로 **여성후보자를 우대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건설기술심 의위원은 우리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도시/교통→건설 정보→열린마당
- 다. 접수된 신청서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선정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일체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등 제출하신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라.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위원의 윤리성 검증」절차 과 정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응모할 수 없습니다.
  - 1) 부패행위 및 징계 전력자
  - 2) 심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과거 전력 보유자
  - 3) 금품수수,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청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 등
- 마. 신청제한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청 내 5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거나,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3회 연속 위촉 대상자
- 마. 기존 위촉위원 중 연임하고자 할 경우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055-211-292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신청서 접수 확인 여부는 별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 유의사항 : 접수된 e-mail 주소와 등록신청서의 e-mail 주소가 일치된 것만 신청서 접수를 인정합니다.

#### [별첨 1]

#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 후보자 등<del>록</del>신청서

사진첨부

# 1. 지원분야 및 인적사항

전	문	= = = =		비브펀고브아		예) ① 콘크리트구조			
분	야	예) 토목구조	세부전공분야		예) ② 내진 및 구조해석				
Д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0000.	00. 00. (남, 여)	
0	0		802		80.55		(만 세)		
자	택	우편번호							
주	소	(00000)	주소) 경남 창원시	시 오잉노 1					
~ =		휴대폰	010-0000-0000	직장		직장	000-000-	0000	
연락처		이메일	00000@hanmail.	.net	계좌번호(은행)		000-000-000-00(농협)		
사회적	덕약자	장애여부(	) ※장애	<i>베를 갖고 계신</i>	/ 분만 <u>-</u>	표기(장애 등급	フ/スト <u>/</u> )		

# 2. 직장(학교)

직 장 명 (학교명)	00시청	부서 (학과)	00과					
직 급 (직 위)	시설서기관(00과장)	지원분야 근무경력	15년	퇴직예정	0000년 00월			
직장주소	우편번호 주소) 경남 창원시 중앙로 1 (00000)							
직 업 군	공무원( ), 대학교( ), 공사, 공단, 연-	구기관( ), 용역	ᅾ사( ), 시공사	( ), 기타( )				

#### 3. 학력 ※ 대학교부터 최종 학력까지 기재(단, 고졸자로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 출신고교 기재)

학위구분	학위취득년월	출신학교	학과(전공분야)	졸업구분
박사	0000.00.00.	00대학교	토목구조	수료
석사	0000.00.00.	00대학교	토목구조	졸업
학사	0000.00.00.	00대학교	토목	졸업

# 4. 경력 및 자격현황 ※ 경력사항은 현 재직기관부터 5건 이내 기재, 자격사항은 상위등급부터 3건 이내 기재

	근무기간(시작~종료)	직위	근무처	주요 업무경력	
	0000. 0. ~ 현재	전무	0000엔지니어링(주)	토목설계	
경 력	0000. 5. ~ 0000. 0.	과장	㈜000건설	현장소장, 공무	
	0000. 5. ~ 0000. 0.	과장 ㈜000건설		현장소장, 공무	
	취득년월		자격종목	인가관리기관	
자격증	0000.00.00.		토목구조기술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7770	0000.00.00.		상하수도기술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0000.00.00.		토목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제2616호

2023. 6. 8.(목)

**5. 상벌** ※ 모집공고 시점부터 최근 5년간 수상한 중요한 상(狀)부터 3건 이내 기재

수상년월일	내 용	수여기관
0000.00.00.		

6. 각종 위원회 활동 ※ 모집공고 시점부터 최근 5년간 건설분야 국가 또는 자치단체 위원회 활동내용만 기재(5건 이내)

위 촉 기 간 (시작~종료)	기관명	위원회명칭	주요기능
0000.00.00. ~ 0000.00.00.	강원도	0000심의위원회	0000 등 심의

7. 주요논문 및 저서 \*\* 모집공고 시점부터 최근 5년간 논문 및 저서 기재(3건 이내) 다만 논문이나 저서가 공저인 경우 2인 이하 공동저자 분만 기재

<b>발 표 년 월</b> (수행기간)	논문·책명	논 문 (책 )핵 심 주 제	출판사·게재지 (발주청)
0000.00. (0000.00. ~ 0000.00.)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및 자격요건 확인가능 서류(자격증, 학위증 등)을 스캔하여 별첨 파일 첨부

# \* <별첨 3-3> : 요약파일(Excel File) - 별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본인은 상기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등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며, 본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심의위원 선정 및 위원회 운영에 활용되며, 보존기간은 2025. 8. 31. 까지로 이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2616호

2023. 6. 8.(목)

#### [별첨 2]

# 후보자 등록신청서 세부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등록신청서 양식 다운방법

경상남도청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에 접속하여

- ▶ 경남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u>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u>
   **모집 공고** 에서 다운받아 작성
- 2. 사진은 증명사진을 스캔해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3. 제출서류 및 신청서 작성 방법
- 가.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한글) 1부, 등록신청서 요약(엑셀) 1부, 재직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최종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요건 서류 이외 첨부 금지)
  - \* 직업군이 교수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서(한글+엑셀)와 재직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나. E-mail 제목 : (○○○○분야)홍길동 등록신청서
- 다. 첨부파일명 작성방법
- ① ○○○○분야 홍길동(등록신청서-한글)
- ② ○○○○분야 홍길동(등록신청서 요약-엑셀)
- ③ ○○○○분야 홍길동(재직증명서)
- ④ ○○○○분야 홍길동(대학교 학위증)
- ⑤ ○○○○분야 홍길동(자격증)
- 4. **지원분야는** 「별첨3」을 참조하여 본인의 전공학과와 세부전공과목, 자격증 보유, 현직의 담당업무 등을 종합하여 기재하되, 반드시 아래의 분류표에서 선택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 및 자격분야가 전문분야와 일치하여야 함)

<작성예시>

1 정무분야	(예)도시계획	세부정곳분야	1	(예)단지계획
1. ሚቲቲማ	(에)포시계릭	게구선정판약	2	(예)도시계획

- 5. <u>인적사항 ~직장현황은</u>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고, 메일주소는 연락받을 메일을 기재합니다.
- 가. 직위(급) : 현재 소속된 기관의 직위(급) 기재
  - ① 행정기관(공무원) : 국장(0급), 과장(0급) 등으로 표기

② 대 학 교: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③ 공기업, 준정부기관 : 임원(0급), 부장(0급) 등으로 기재

연구기관 :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으로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기재

④ 건설기술 관계 단체 등 : 임원

나. 퇴직예정 : 현직에서의 예정 퇴직연월 기재

- 6. <u>직업군은</u> 자격기준을 참조하여 신청자 본인이 소속된 기관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인지 확인한 후 해당 직업군을 기재합니다.
- 7. <u>학력은</u>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시고, 학위 구분은 박사, 석사, 학사로 구분하고 졸업, 수료, 재학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고졸 이하의 졸업자께서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출신학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8. **정력은** 등록신청한 전문분야와 관련 있는 업무에 좋사한 기간, 직위, 근무처, 주요업무경력 위 주로 5건 이내로 기재합니다.
- 9. **자격현황은** 국가공인기관이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종목 및 등급을 상위등급 부터 3건 이내로 기재합니다.(국가공인기관 자격증이 없는 분야는 예외)
- 10. 상벌은 모집공고 시점부터 최근 5년간 수상한 중요한 상(狀)부터 3건 이내로 기재합니다.
- 11. <u>각종 위원회 활동은</u> 등록신청한 전문분야와 관련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활동실 적을 최근 5년간, 5건 이내로 기재합니다.
- 12. <u>주요논문 및 저서는</u>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주요 저서 및 논문, 특허 또는 신기 술·신공법 등의 제목과 주요내용을 최근 5년간 3건 이내로 기재합니다.
- 13. 후보자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스캔하여 제출

# [별첨 3]

# 전문분야 및 세부 전공분야 분류표

전문 분야 (21개분야)	세부 전공 분야
1. 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설계, 단지계획, 단지설계, 지역계획, 경관계획
2. 도 로	도로계획, 도로설계, 측량 및 측지, 공항, 포장, 교량
3. 철도·궤도	철도계획 및 설계, 철도 및 궤도·삭도시공 및 유지관리(도시철도 포함)
4. 교 통	교통계획, 교통체계, 교통안전시설, 교통영향, 교통경제
5. 수 자 원	댐 및 제방, 하천, 수문지질, 수자원, 수리 구조물
6.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정수처리, 하수처리
7. 항만·해안	항만, 연안계획, 해안시공, 해양물리, 해양지질, 해양수공
8. 토목구조	콘크리트구조, 강구조, 합성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9. 토질·지질	지반, 사면, 토질기초, 터널, 토류구조물
10. 토목시공	토목시공, 건설관리(토목),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11. 건축계획	건축계획, 건축설계, 전시기획, 건축디자인
12. 건축시공	건축시공, 건축재료, 건설관리(건축),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13. 건축구조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합성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14. 건축설비	건축설비(전기, 통신, 기계, 위생, 냉난방, 소방)
15. 기계·금속	기계설비, 제작시공,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및 용접, 금속재료 및 가공
16. 전기·전자	전기설비, 송·배전, 전기·전자응용, 전기안전, 공업계측제어
17. 정보통신	통신설비, 전자통신, 정보관리
18. 환 경	자연환경,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 진동, 환경평가, 환경설비
19. 폐 기 물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폐수처리, 폐기물처리시설
20. 조 경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식재
21. 건설안전	건설안전, 산업안전

알 림

# ● 창원시 고시 제2023-99호

# 창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7-209호(2017.09.14.)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8-5호(2018.01.1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8-118호(2018.05.03.)로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정정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9-45호(2019.03.14.)로 개발계획(변경)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9-279호(2019.12.12.), 창원시 고시 제2021-251호(2021.9.23.), 창원시 고시 제2021-365호(2021.12.31.)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2-76호(2022.04.15.)로 개발계획(변경)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2-253호(2022.12.30.)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3-49호(2023.03.16.)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창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5일

#### 창 원 시 장

#### Ⅰ. 창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창원 여좌지구 도시개발구역

####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 면 적
  - 도시개발구역 : (기정) 327,291.5㎡ (변경) 327,367.0㎡ (증 75.5㎡)
  - 구역 외 사업: (기정) 38,797.2m²(교통광장: 36,761.1m², 도로: 2,036.1m²)

(변경) 38,793.6m² (감 3.6m²), (교통광장 : 36,757.4m², 도로 : 2,036.2m²)

○ 변경사유 : 지적측량(분할) 결과반영 및 교육연구시설(학교), 녹지 변경

##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지역 내 부족한 교육·연구시설, 지역민의 여가, 문화, 건강, 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업무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창원시장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17. 09. 14. ~ 2023. 12. 31.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제22조에 따른 수용·사용방식

#### 6.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변경)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	n  77													
합 계		327,291.5	중)75.5	327,367.0	100.0															
亚辛	우연구	시설용지	153,388.9	증)35.6	153,424.5	46.9	교육연구시설(G) 학교 중복(A=11,696.5㎡) 포함													
기타		소 계	13,773.0	_	13,773.0	4.2														
시설	え	육시설	7,173.0	_	7,173.0	2.2														
용지	Ŷ	<b>부시설</b>	6,600.0	_	6,600.0	2.0														
		소 계	160,129.6	증)39.9	160,169.5	48.9														
		도 로	57,049.6	증)40.0	57,089.6	17.4	도시계획도로(A=56,225.6㎡), 구역 외 2,036.2㎡													
	광 장		18,174.0	증)6.0	18,180.0	5.6	근린공원 중복(A=2,187㎡) 제외, 구역 외 36,757.4㎡													
		소계	63,399.0	_	63,399.0	19.4														
도시 기반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근린공원	52,193.0	-	52,193.0	16.0	2개소, 광장중복(A=2,187㎡) 포함, 유수지중복(A=4,410.6㎡) 포함
시설		소공원	11,206.0	_	11,206.0	3.4	3개소													
용지		녹 지	17,493.6	감)6.1	17,487.5	5.3	완충녹지 1개소, 경관녹지 2개소													
		주차장	4,013.4	_	4,013.4	1.2	1개소													
		(학교)	(11,660.9)	증) 35.6	(11,696.5)	(3.6)	교육연구시설용지 중복(A=11,696.5㎡)													
	(-	유수지)	(4,410.6)	_	(4,410.6)	(1.3)	근린공원 중복(A=4,410.6m²)													
		구린공원, 장 중복)	(2,187.0)	_	(2,187.0)	(0.7)														

# 나) 구역외 사업 (변경)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비고
ੀ ਦ	기 정	증 감	변 경	(%)	11 <u>11</u>
계	38,797.2	감) 3.6	38,793.6	100.0	
교통광장	36,761.1	감) 3.7	36,757.4	94.8	
도 로	2,036.1	증) 0.1	2,036.2	5.2	

- 다)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변경없음)
- (2) 도시기반시설계획 (변경)
- 가) 도로 계획 (변경없음)
- 나) 주차장 계획 (변경없음)
- 다) 공원 계획 (변경없음)
- 라) 녹지 계획 (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m²)		비고
1 1	번호	\\\\ = 3	종류	T 7	기 정	증 감	변 경	n  12
	계	•	-	_	17,493.6	감) 6.1	17,487.5	
소계 녹		녹지	완충 녹지	_	4,745.7	감) 6.1	4,739.6	
변경	변경 253 녹지		완충 녹지	진해구 여좌동 5-25번지 일원	4,745.7	감) 6.1	4,739.6	면적축소
3	소계		경관 녹지	-	12,747.9	-	12,747.9	
기정 248 녹		녹지	경관 녹지	진해구 태백동 24-2번지 일원	5,420.9	_	5,420.9	
기정 249		녹지	경관 녹지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7,327	_	7,327	

# 마) 광장 계획 (변경)

7.14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m²)		비고
구분	번호	번호 기질병	종류	T 1	기 정	증 감	변 경	1 11 11
	계	-	_	-	57,122.1	증) 2.3	57,124.4	근린공원 91
구역내	100	광장	교통	진해구 태백동	20,361.0	증) 6.0	20,367.0	중복(2,187㎡), 지적측량(분할)
구역외	100	93	광장	산52-136번지 일원	36,761.1	감) 3.7	36,757.4	결과반영

## 바) 학교 계획 (변경)

7 H	도면표시	기러터	시설의	o] ⇒]		면적(m²)		nj –
구분	번호	시설명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	-	11,660.9	증) 35.6	11,696.5	-
변경			중학교	진해구 여좌동 70번지 일원	11,660.9	증) 35.6	11,696.5	교육연구 시설(G)

사) 유수지 계획 (변경없음)

#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관한 토지명세서 (변경): [별첨1]

#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시설명 구분			계획내용
		위치		·진해구 태백동 산52-136번지 일원
		시설의	기정	·A=57,122.1㎡(구역 외 36,761.1㎡)
	광장	제원	변경	·A=57,124.4㎡(구역 외 36,757.4㎡)
1	(교통광장)	비용부	담사유	·교통광장 신설을 통한 사업지구로의 원활한 진출입 도모
	(변경) 	비용부담범위		·보상비 및 공사비
		사업시행자		·창원시장
		재원	조달	·전체 시비 조달예정
		위치		·중로 1-233
		시설의	제원	$\cdot$ B = 20m(8m), L = 252m(252m)
2	도로	비용부	담사유	·구역 외 도시계획도로 확폭을 통한 원활한 교통처리 도모
2	(변경없음)	비용부	담범위	·보상비 및 공사비
		사업기	· 기행자	· 창원시장
		재원	조달	·전체 시비 조달예정

####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 공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창원시청(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소 개발사업과)

####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사항 (변경)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1) 도시개발구역 결정 (변경)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그ㅂ	도면	그려며	위치		면 적(m²)		회 > 겨 저 ol	비고
17 12	구분 표시번호 구	구역명	귀 시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미끄
변경	_	창원 여좌지구 도시개발구역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 일원	327,291.5	증) 75.5	327,367.0	창원시고시 2017-209호 (2017.09.14.)	_

####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_	창원 여좌지구	·면적변경	·학교용지 추가 및 녹지면적 축소,
	도시개발구역	- A=327,291.5㎡ → 327,367.0㎡(중 75.5㎡)	지적측량(분할) 결과반영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구역명	위치		면 적(m²	)	최초결정일	비고
17 &	표시번호	7 7 7	T 1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38	창원 여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 일원	327,291.5	증) 75.5	327,367.0	창원시고시 2017-209호 (2017.09.14.)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38	창원 여좌지구	·면적변경	· 학교용지 추가 및 녹지면적 축소,
	지구단위계획구역	- A=327,291.5m² → 327,367.0m²(중 75.5m²)	지적측량(분할) 결과반영

#### Ⅱ. 창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창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지역 내 부족한 교육·연구시설, 지역민의 여가, 문화, 건강, 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업무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 면 적

- 도시개발구역 : (기정) 327,291.5㎡ (변경) 327,367.0㎡ (증 75.5㎡)

- 구역 외 사업: (기정) 38,797.2m²(교통광장: 36,761.1m², 도로: 2,036.1m²)

(변경) 38,793.6m² (감 3.6m²), (교통광장 : 36,757.4m², 도로 : 2,036.2m²)

※(기정) 교통광장 36,761.1㎡ 중 6,132.5㎡, 도로 2,036.1㎡ 공사시행

(변경) 교통광장 36,757.4㎡ 중 5,985.8㎡, 도로 2,036.2㎡ 공사시행

○ 변경사유: 지적측량(분할) 결과반영 및 교육연구시설(학교), 녹지 변경

## 4. 시행자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창원시장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 5.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17. 09. 14. ~ 2023. 12. 31.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제22조에 따른 수용·사용방식

#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²)	)	- 최초결정일	비고	
丁七		T = 5	71 /1	기 정	변 경	변경후		미끄	
변경	238	창원 여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 일원	327,291.5	증) 75.5	327,367.0	창원시고시 2017-209호 (2017.09.14.)	_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38	창원 여좌지구	·면적변경	· 학교용지 추가 및 녹지면적 축소,
	지구단위계획구역	- A=327,291.5m² → 327,367.0m²(증 75.5m²)	지적측량(분할) 결과반영

#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용도지역세분		면 적(m²)	)	구성비	비고
*도시티	중도시 국제군 	기 정	변 경	변경후	(%)	" -
힘	계	327,291.5	증) 75.5	327,367.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93,039.0	증) 69.5	293,108.5	89.5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4,252.5	증) 6.0	34,258.5	10.5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위치	용도지역		면적(m²)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표시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설생(현경) 사ㅠ	
_	창워시 진해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293,039.0	293,108.5	220	· 학교용지 추가 및 녹지면적 축소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_	여좌동 일원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4,252.5	34,258.5	100	· 지적측량(분할) 결과반영	

제2616호

2023. 6. 8.(목)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1) 교통시설 (변경없음)
- 가) 도로 (변경없음)
- 나) 주차장 (변경없음)
- 2) 공간시설 (변경)
- 가) 공원 (변경없음)
- 나)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7,12	도면		시설의	61 -1		면 적(m²)		최초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계		-	_	17,493.6	감) 6.1	17,487.5	_	
2	<b>는</b> 계	녹지	완충녹지	-	4,745.7	감) 6.1	4,739.6	_	
변경	253	녹지	완충녹지	진해구 여좌동 5-25번지 일원	4,745.7	감) 6.1	4,739.6	창원시고시 제2018-5호 (2018.1.11)	
2	<b>는</b> 계	녹지	경관녹지	-	12,747.9	-	12,747.9	-	
기정	248	녹지	경관녹지	진해구 태백동 24-2번지 일원	5,420.9	_	5,420.9	창원시고시 제2018-5호 (2018.1.11)	
기정	249	녹지	경관녹지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7,327	-	7,327	창원시고시 제2018-5호 (2018.1.11)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53	완충녹지	· 면적변경 : 4,745.7㎡ → 4,739.6㎡ (감 6.1㎡)	· 일부구간 건축물 편입에 따른 녹지 축소

#### 다) 광장 (변경)

####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시설명 시설의		위 >	<i>i</i> ]		면 적(m²)		최 초	비고
1 1 1	표시번호	기결정	종류	TI /	`\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포
	계	-	_	_		57,122.1 (36,761.1)	증) 2.3 (감 3.7)	57,124.4 (36,757.4)	_	_
변경	100	광장	교통 광장	진해구 태변 산52-136 번지 일육	3	57,122.1 (36,761.1)	증) 2.3 (감 3.7)	57,124.4 (36,757.4)	창원시고시 제2018-5호 (2018.1.11)	근린공원91 중복(2,187㎡), ()는 구역밖임

####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00	광장	· 면적변경 - A=57,122.1㎡ → 57,124.4㎡(증 2.3㎡)	· 지적측량(분할) 결과반영

- 3)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 가) 학교 (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ユロ	도면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m²)		최초	비고
丁七	구분 표시 시설명 <sup>자결의</sup> 번호 번호 종류	종류	カ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1 11 12	
	계		_	-	11,660.9	증) 35.6	11,696.5	-	-
변경	281	학교	중학교	진해구 여좌동 70번지 일원	11,660.9	증) 35.6	11,696.5	창원시고시 제2023-49호 (2023.03.16.)	교육연구 시설(G)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81	학교	・면적변경 : 11,660.9㎡ → 11,696.5㎡ (중 35.6㎡)	· 구역내 현황도로는 제척하고, 학교시설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학교용지 일부구간 확장			

- 4) 방재시설 (변경없음)
- 가) 유수지 (변경없음)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	면적(m²)		획 지				
				번호	위 치	면적(m²)		비고
		기정	변경	년오	귀 시	기정	변경	
	ı	171,175.3	171,210.9	1	-	171,175.3	171,210.9	-
	교[A]	14,324	14,324	I	진해구 태백동 26-32번지 일원	14,324	14,324	• 교육연구시설용지
	교[B]	78,080	78,080	I	진해구 태백동 20-2번지 일원	78,080	78,080	• 교육연구시설용지
	교[C]	10,613	10,613	1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1,633	1,633	교육연구시설용지
				2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146	2,146	
				3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1,992	1,992	
				4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847	2,847	
				5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1,995	1,995	
	교[D]	15,438	15,438	1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9,628	9,628	
				2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5,810	5,810	
	ш[E]	10,500	10,500	1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236	2,236	교육연구시설용지
				2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1,924	1,924	
				3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603	2,603	
				4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1,530	1,530	
				5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207	2,207	

				,						
			(m²)	획 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也得	면적(m²)		위 치	면적(m²)		비고		
		기정	변경	번호	カ A 	기정	변경			
				1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695	2,695			
				2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631	2,631	• 교육연구시설용지 • 획지 합병 가능, 분할		
	교[F]	F] 12,773	12,773	3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347	2,347	불허(단, 합병된		
				4	4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250	2,250	필지의 향후 분할 시 합병 전 획지계획 준수)	
							5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	2,850	2,850
	교[G]	11,660.9	11,696.5	-	진해구 여좌동 70번지 일원	11,660.9	11,696.5	• 교육연구시설용지 • 도시계획시설(학교)		
	체	7,173	7,173	-	진해구 여좌동 12번지 일원	7,173	7,173	• 체육시설용지		
				1	진해구 여좌동 13번지 일원	3,300	3,300	• 업무시설용지 • 획지 합병 가능, 분할		
	쉅	6,600	6,600	2	진해구 여좌동 13번지 일원	3,300	3,300	- 독시 합청 기장, 문설 불허(단, 합병된 필지의 향후 분할 시 합병 전 획지계획 준수)		
	주	4,013.4	4,013.4	-	진해구 여좌동 78번지 일원	4,013.4	4,013.4	• 공공시설용지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1) 교육연구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

##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용도	<ul> <li>허용용도</li> <li>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li> <li>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li> <li>- 가.(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li> <li>- 라.(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li> <li>·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li> <li>·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 · 오수 · 상수처리시설, 매점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li> </ul>
교육연구	건폐율	• 60%이하
시설용지 [ A ]	용적률	• 220%이하
[A]	높 이	• 5층이하
	배 치	<ul> <li>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li> <li>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li> </ul>
	형 태	-
	색 채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름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용도	<ul> <li>허용용도</li> <li>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li> <li>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li> <li>- 가.(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li> <li>- 라.(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li> <li>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li> <li>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소수·상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li> </ul>
교육연구	건폐율	• 60%이하
시설용지	용적률	• 220%이라
[ B ]	높 이	• 10층이하
	배치	<ul> <li>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 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li> <li>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li> </ul>
	형 태	-
	색 채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축물 용도	<ul> <li>● 허용용도</li> <li>1.「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li> <li>2.「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li> <li>- 가.(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li> <li>- 라.(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li> <li>●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li> <li>●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수·상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li> </ul>
교육연구	건폐율	• 60% া ই
시설용지	용적률	• 220%이하
[ C ]	높 이	• 5층이하
	배치	<ul> <li>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 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li> <li>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li> </ul>
	형 태	-
	색 채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정도에 따름
교육연구 시설용지 [ D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1.「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가.(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 - 라.(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

구	분	계 획 내 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4의 9호 가목에서 바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은「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은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 4.「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발전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발전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수・상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 이	• 10층이하
	배 치	<ul> <li>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 하여 지형에 순용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li> <li>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2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li> </ul>
	형 태	-
	색 채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름
<b>코오영</b> 구	건축물 용도	<ul> <li>허용용도</li> <li>1.「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li> <li>2.「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li> <li>- 가.(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li> <li>- 라.(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li> <li>3.「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li> <li>·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li> <li>·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수・상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li> </ul>
교육연구 시설용지	건폐율	• 60%이하
[E]	용적률	• 220%이하
	높 이	
	배 치	<ul> <li>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 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li> <li>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3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li> </ul>
	형 태	-
	색 채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건축선	결정도에 따름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용도	하용용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가.(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 한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사수・상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시설  설				
교육연구	건폐율	• 60%이하					
시설용지 [F]	용적률	• 220% ণ ক					
[1]	높 이	• 10층이하					
	배 치	<ul> <li>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 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 것을 권장한다.</li> <li>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li> </ul>					
	형 태	-					
	색 채	<ul> <li>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li> <li>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li> </ul>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 결정도에 따름					
	건축물 용도	하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 설치 기준에 따른다.	<ul> <li>교육연구시설용지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li> <li>중학교 설치를 위 교육부 중앙투자 조건사항</li> </ul>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20%이하					
교육연구 시설용지	높 이	• 5층이하					
[ G ]	배 치	<ul> <li>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 것을 권장한다.</li> <li>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li> </ul>					
	형 태	-					
	색 채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결정도에 따름	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제2616호

2023. 6. 8.(목)

##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용도	<ul> <li>허용용도</li> <li>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li> <li>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li> <li>- 가.(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li> <li>- 라.(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li> <li>·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li> <li>·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오수·상수처리시설, 매점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li> </ul>
교육연구	건폐율	• 60% া ক
시설용지	용적률	• 220%이하
[ A ]	높 이	• 5층이하
	배 최	<ul> <li>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li> <li>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li> </ul>
	형 태	-
	색 채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축물 용도	<ul> <li>허용용도</li> <li>1.「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li> <li>2.「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li> <li>- 가.(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li> <li>- 라.(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li> <li>·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li> <li>•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오수·상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li> </ul>
교육연구	건폐율	• 60%이하
시설용지	용적률	• 220%이하
[ B ]	높 이	• 10층이하
	배 치	<ul> <li>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 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li> <li>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li> </ul>
	형 태	-
	색 채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름
교육연구 시설용지 [ C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1.「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가.(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

구 -	분	계 획 내 용
		<ul> <li>라.(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li> <li>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li> <li>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수・상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li> </ul>
	건폐율	• 60%ণ্ট
	용적률	• 220%이하
	높 이	• 5층이하
	배 치	<ul> <li>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 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li> <li>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li> </ul>
	형 태	-
	색 채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정도에 따름
교육연구 시설용지 [ D-1 ]	건축물 용도	<ul> <li>허용용도</li> <li>1.「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li> <li>2.「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li> <li>- 가.(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li> <li>- 라.(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li> <li>3.「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li> <li>- 지식산업센터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4의 9호 가목에서 바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li> <li>-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은「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li> <li>-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은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li> <li>4.「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li> <li>•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li> <li>•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수·상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li> </ul>
	건폐율	• 60% া ক
	용적률	• 220%이하
	높 이	• 10층이하
	배 치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 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
	색 채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름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연구 시설용지 [ D-2 ]	건축물 용도	<ul> <li>허용용도</li> <li>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li> <li>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li> <li>- 가.(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li> <li>- 라.(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li> <li>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li> <li>- 지식산업센터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4의 9호 가목에서 바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li> <li>-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li> <li>-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은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li> <li>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발전시설</li> <li>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li> <li>6.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국방·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따른 국방・군사시설 &lt;신설&gt;</li> <li>•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li> <li>•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세로 의사적 보석의 변화
	건폐율	수·상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 • 60%이하
	용적률	• 220%이라
	높 이	• 10층이하
	배 치	<ul> <li>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 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li> <li>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li> </ul>
	· 형 태	
	색 채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름
교육연구 시설용지 [ E ]	건축물 용도	<ul> <li>허용용도</li> <li>1.「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li> <li>2.「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li> <li>- 가.(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목</li> <li>- 라.(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li> <li>3.「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국방·군사시설 중「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따른 국방・군사시설</li> <li>・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li> <li>・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설, 공급시설, 우수・소수・상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li> </ul>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 이	• 5층이하
	배 치	<ul> <li>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 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li> <li>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li> </ul>

구	분	계 획 내 용				
	형 태	-				
	색 채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결정도에 따름	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건축물 용도	<ul> <li>허용용도</li> <li>1.「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li> <li>2.「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li> <li>- 가.(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li> <li>라.(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li> <li>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국방·군사시설 중「국방·군사시설따른 국방・군사시설</li> <li>・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대피시설, 소방시수・상수처리시설 또는 이와 관계된 유사한 시설을 말함.</li> </ul>	보업전시장, 박람회장, 보 사업에 관한 법률  설			
교육연구	건폐율	• 60% া ক				
시설용지 [ F ]	용적률	• 220%이하				
	높 이	• 10층이하				
	배 최	<ul> <li>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 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li> <li>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li> </ul>				
	형 태	-				
	색 채	<ul> <li>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li> <li>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li> </ul>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결정도에 따름	게 관한 도시관리계획			
	건축물 용도	하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 설치 기준에 따른다.	교육연구시설용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중학교 설치를 위 교육부 중앙투자 조건사항			
	건폐율	• 60% া ঈ				
_ 0 3	용적률	• 220%이하				
교육연구 시설용지	높 이	• 5층이하				
[ G ]	배 치	<ul> <li>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증 것을 권장한다.</li> <li>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li> </ul>				
	형 태	-				
	색 채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여 결정도에 따름	게 관한 도시관리계획			

## (2) 체육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2.「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권장용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보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20%이하
체육시설	높 이	• 5층이하
용지 [ 체 ]	배최	<ul> <li>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li> <li>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li> </ul>
	형 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 외부 노출 금지
	색 채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하게 사용 (단, 외벽면의 70%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는 제외)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름

## (3) 업무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시설 용지 [ 업 ]	건축물 용도	<ul> <li>허용용도</li> <li>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업무시설 및 부대시설</li> <li>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중</li> <li>- 바.(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속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목</li> <li>- 사.(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li> <li>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li> <li>· 권장용도</li> <li>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업무시설 및 부대시설</li> <li>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중</li> <li>- 바.(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속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목</li> <li>- 사.(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목</li> <li>•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 60%) ক
	용적률	• 220%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최	<ul> <li>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li> <li>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li> </ul>

구	분	계 획 내 용
	형 태	<ul> <li>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사용</li> <li>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 외부 노출 금지</li> </ul>
	색 채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하게 사용 (단, 외벽면의 70%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는 제외)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름

### (4) 주차장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른 부대시설(총 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부대시설이라함은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시장이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말함.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 ক						
	용적률	• 220%이하						
주차장	높이	• 5층이하						
용지 [주]	배치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형 태	-						
	색 채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하게 사용 (단, 외벽면의 70%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는 제외)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름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6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 등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 활동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여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 (지침적용의 구성)

• 본 지침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2장 공통 사항, 제7장은 기타사항으로 모든 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3장은 교육연구시설용지에, 제4장은 체육시설용지에, 제5장은 업무시설용지에, 제6장은 노외주차장에 각각 적용한다.

###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 본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여좌지구 도시개 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 야 하며, 본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및 창원시 관련조례를 따른다.
- 본 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지침내용을 수용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이다.
- 본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지침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 (용어의 정의)

-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허용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것을 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용도로 건축해야 하는 용도를 말한다.
  -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어도 해당 필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 "용적률"이라 함은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 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 "건폐율"이라 함은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범위 안에서 별표로 정한 건폐율을 말한다.
  -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6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조성에 적용된다.

### 제2장 공통사항

### 제1조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 건축물은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배치를 권장하며, 채광·통풍·일조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 제2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계획된 경우 해당 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3조 (부설 주차장)

•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 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익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과 창원시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장 교육연구시설용지

#### 제1조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 조서에 따른다.

## 제2조 (건축물의 밀도 높이)

제2616호

2023. 6. 8.(목)

•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건폐율	최저층수

220%	5층/ 10층 이하
60%	_

• 교육연구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20% 이하, 최고층수는 5층이하(A, C, E, G), 10층 이하(B, D, F)로 적용한다.

## 제3조 (가구 및 획지계획)

•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연접한 필지의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한다. 단, 합병된 획지의 재분할은 가능하다. 이 경우 최초 결정된 획지계획을 준수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 제4장 체육시설용지

## 제1조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에 따른다.

### 제2조 (건축물의 밀도 높이)

•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건폐율	최저층수

220%	5층 이하
60%	_

• 체육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20% 이하, 최고층수는 5층 이하로 적용한다.

## 제5장 업무시설용지

### 제1조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에 따른다.
- 업무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20% 이하, 최고층수는 5층 이하로 적용한다.

### 제2조 (건축물의 밀도 높이)

•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건폐율	최저층수

220%	5층 이하
60%	_

제2616호

2023. 6. 8.(목)

## 제3조 (가구 및 획지계획)

•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연접한 필지의 합병은 가능하나 분할은 불허한다. 단, 합병된 획지의 재분할은 가능하다. 이 경우 최초 결정된 획지계획을 준수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 제6장 노외주차장

### 제1조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 조서에 따른다.

### 제2조 (건축물의 밀도 높이)

•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건폐율	최저층수

220%	5층 이하
60%	_

• 노외주차장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20% 이하, 최고층수는 5층 이하로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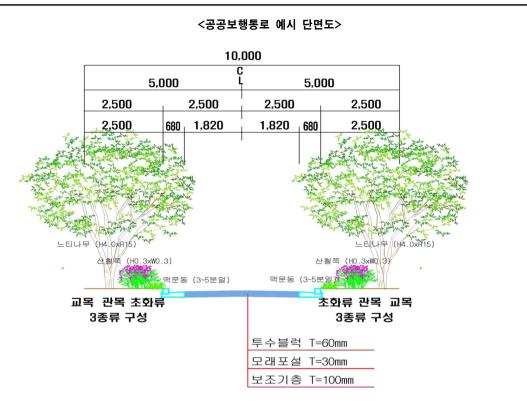
### 제7장 기타사항

#### 제1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련조례 등에 따른다.

#### 제2조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사항)

- 설치방식 및 위치
  - 설치 위치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분할된 획지 선으로부터 양측 각 5m(통로폭 10m)를 확보하여 조성한다.
  - 통행에 장애가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가능토록 조성하되, 예시 단면도와 같이 식수대를 설 치하여 보행자의 Amenity 향상을 도모한다.



### • 식재 수종

- 교목, 관목, 초화류 3종류로 구성한다. 교목은 느티나무(H4.0×R15), 관목은 산철쭉 (H0.3×W0.3), 초화류는 맥문동(3~5분얼)을 주로 식재하고, 조화로운 조경을 형성할 수 있는 기타 수종도 식재할 수 있다.

### 포장

- 공공보행통로의 일체감있는 조성을 위하여 투수블럭(T=60mm), 모래포설(T=30mm), 보조기층 (T=100mm)으로 포장토록 한다.
- 보행안전 안내시설
  - 공공보행통로 주요 출입부에 안내 표지판 또는 1m높이의 안내기둥 형태의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위치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차량의 접근을 최소화한다.
  - 안내기둥 시설은 주간에는 시각적으로 지역(장소)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하여 밝은색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조명을 이용하여 낮과 밤에도 연속적인 차량 및 보행안내 시설물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 안내기둥 시설은 기타 시설물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장식적이고 조형적인 형태를 지님으로써 시각적으로 눈에 잘 뛸수 있도록 설계·배치한다.

#### 제3조 (가로식재에 관한사항)

- 수종선정
  - 훼손되는 수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수목을 조경수로 활용토록 권장한다.

- 가로의 특성 및 가로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수종을 선정한다.
- 계절성이 풍부하여 토양, 기후 등 생태적 조건이 적합한 향토수종을 선정한다.
- 이식이 용이하고 전정에 잘 견디며 병충해에 강해 관리가 편리한 수종을 선정한다.
- 알레르기 질환 등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수종은 가급적 배제한다.
- 식재방법
- 가로조명과 교통안내 표지판,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위하여 식재한다.
- 간선도로의 교차부분에서는 운전자 및 보행자가 도로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 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 가로변 독자성과 식별성 구현을 위해 일정구간을 기본 단위로 수종선택 및 배식기법의 다양화를 기하여야 한다.
- 보행밀도가 높은 곳의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목보호대를 폭1~2m 이하로 설 치하고 수목보호대를 이용한 다용도 휴게벤치 공간을 조성한다.
-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가려져 있는 녹지 및 조형물의 전방 배치와 승·하차장 주변 위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에 휴게공간 설치를 권장한다.

### 제4조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

• 창원시가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생태 개념 적용을 종합적·체 계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창원시 지속가능한 생 태도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학교시설은 안전을 이유로 옥상개방이 제한적이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 (대지 내 공지 계획)

- 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도로에서 후퇴된 건축선 후퇴공간에는 자연생 태적 연결 녹지공간 확보를 유도하여 아름다운 경관형성과 어매니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적용기준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상 토지이용 용도별 구분된 건축 선 계획에 따라 건축선을 후퇴하여야 한다.
  - 주요 교차로 및 결절점 등이 있는 경우 보도 공개공지, 전면공지, 건축물의 입면 등을 고려하여 녹지공간 확보와 보행자 편의가 확보되는 통합설계를 권장한다.
- 교차로 및 인접필지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 설계
- 소형 필지는 주변 녹지공간과 가구 및 획지간의 연계체계를 고려 설계하여야 한다.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녹지공간이 외부에서 내부로 연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행도로와 연계한 가로공간 조성
- 보도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등을 일체적으로 조성하여 단차발생을 최소화하고 녹지공간연계 도모, 보행자의 가로활동을 감안하여 활동공간을 배분하여야 한다.
- 조경식재로 인한 가로지장물은 가급적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계획과 연계한 녹지공간 확보
  - 선형 녹지 확장 개념에서 건축물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건축물 이용 보행동선과 녹지공간이 조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제6조 (공개공지 계획)

- 조성형태
  -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 지양한다.
  -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야외무대등과 투수성 포장 등을 권장한다.
  -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쌈지공원 형태를 권장한다.
  -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m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보 행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보도형 공개공지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 (물 재이용 계획)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빗물의 효율적 이용도모를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7.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공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창원시청(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소 개발사업과) ○ 지형도면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8.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변경없음)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 · 수익의 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 [별첨 1]

## 수용 사용되는 토지의 세목과 그 토지소유자에 관한 토지명세서 (변경)

## 1. 도시개발구역내(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1v1	지목	면적(m')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w=
[쒼턴	十七	구	동	지번	715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ブ	  정				377,780.7	327,291.5						
ŧ	[경	합 계			327,367.0	327,367.0						
1	기정	الداد	여좌동	1 11	대	12.2	12.2	-31.01.11				대장면적
1	변경	신애丁	어작공	1 - 11	41	23.1	23.1	창원시				정정
2	기정	진해구	여좌동	1 - 12	대	67.8	67.8	창원시				
3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4	전	60.7	1.0	창원시				지적분할
J	변경	진해구	여좌동	5 - 32	전	0.4	0.4	창원시				결과반영
4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9	답	129.4	106.0	창원시				지적분할
4	변경	진해구	여좌동	5 - 33	답	106.4	106.4	창원시				결과반영
5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11	답	349.9	243.0	창원시				지적분할
	변경	진해구	여좌동	5 - 34	답	241.2	241.2	창원시				결과반영
6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22	도	155.1	16.0	창원시				지적분할
	변경	진해구	여좌동	5 - 35	도	16.5	16.5	창원시				결과반영
7	기정	·진해구	어지도	5 - 25	답	344.1 3	344.1	창원시				지적분할
Ĺ	변경	'판에।	7-40	3 23	н	338.0	338.0	9.671				및 축소
8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26	도	27.3	27.3	창원시				
9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27	임	189.6	189.6	창원시				
10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29	답	269.4	170.0	창원시				지적분할
	변경	진해구	여좌동	5 - 36	답	169.5	169.5	창원시				결과반영
11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30	도	42.3	23.0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변경	진해구	여좌동	5 - 37	도	24.0	24.0	국토교통부				결과반영
12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31	도	52.1	47.0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변경	2-11	1-10	0 01		48.6	48.6	122340 1				결과반영
13	기정	·진해구	여좌동	10 - 1	대	20.1	20.1	창원시				대장면적
	변경	L-111	1-10	10 1		16.9	16.9	0.6.1				정정
14	기정	진해구	여좌동	11 - 1	대	364.0	364.0	창원시				
15	기정	진해구	여좌돗	11 - 4	대	141.8	141.8	창원시				대장면적
	변경				L"	135.5	135.5					정정
16	기정	진해구	여좌동	12	대	1,032.1	1,032.1	창원시				
17	기정	진해구	여좌동	13	대	7,193.4	7,193.4	창원시				
18	기정	진해구	여좌동	19	대	4,482.6	4,482.6	창원시				
19	기정	진해구	여좌동	23 - 1	도	11.2	11.2	창원시				
20	기정	진해구	여좌동	23 - 3	도	11.9	11.9	창원시				

OH HJ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소유자		유권 의 권리	비고
컨텐	丁七	구	동	시킨 	/1 <del>4</del>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21	기정	진해구	여좌동	23 - 4	대	512.0	512.0	창원시				
22	기정	진해구	여좌동	67 - 2	대	456.2	456.2	창원시				
23	기정	진해구	여좌동	67 - 4	도	27.3	27.3	창원시				
24	기정	진해구	여좌동	67 - 5	도	11.2	11.2	창원시				
25	기정	진해구	여좌동	68 - 2	대	271.1	271.1	창원시				
26	변경	진해구	여좌동	70	대	22.3	22.3	창원시				신규편입
27	기정	진해구	여좌동	70 - 1	대	3,938.0	3,938.0	창원시				
28	기정	진해구	여좌동	78	대	6,077.7	6,077.7	창원시				
29	기정	진해구	여좌동	91 - 1	대	77.7	77.7	창원시				
30	기정	진해구	여좌동	140-1	대	104.8	104.8	창원시				
31	기정	진해구	여좌동	142-1	대	233.7	233.7	창원시				
32	기정	진해구	여좌동	144-7	대	234.1	234.1	창원시				
33	기정	진해구	여좌동	146-1	대	241.3	241.3	창원시				
34	기정	진해구	여좌동	148-1	대	219.5	219.5	창원시				
35	변경	진해구	여좌동	159-2	대	53.3	53.3	창원시				신규편입
36	기정	진해구	여좌동	159-3	대	148.4	148.4	창원시				
37	기정	진해구	여좌동	924-1	대	174,043.3	174,043.3	창원시				
-00	기정	-) -)) <sup>-</sup> /	시키드	007 105	_	12,793.3	12,793.3	2) 6) 1)				지적분할
38	변경	신해구	여좌동	927-185	도	12,792.4	12,792.4	창원시				결과반영
200	기정	진해구	여좌동	927-187	도	1,227.8	1,196.5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39	변경	진해구	여좌동	927-198	도	1,196.4	1,196.4	국토교통부				결과반영
40	기정	진해구	여좌동	927- 188	도	38.0	38.0	창원시				
41	기정	진해구	여좌동	933-48	대	60.6	60.6	창원시				
42	기정	진해구	여좌동	933-62	대	25.7	25.7	창원시				
43	기정	진해구	태백동	12 - 147	전	9.0	9.0	창원시				
44	기정	진해구	태백동	12 - 148	잡	24.0	24.0	창원시				
45	기정	진해구	태백동	18	대	529.0	529.0	창원시				
46	기정	진해구	태백동	19 - 1	대	1,451.0	1,451.0	창원시				
47	기정	진해구	태백동	20 - 1	대	466.0	466.0	창원시				
48	기정	진해구	태백동	20 - 2	대	17,527.0	17,527.0	창원시				
49	기정	진해구	여좌동	22 - 1	답	952.0	952.0	창원시				
50	기정	진해구	태백동	22 - 3	답	3,457.0	3,457.0	창원시				
51	기정	진해구	태백동	22 - 4	대	982.0	982.0	창원시				
52	기정	진해구	태백동	22 - 6	답	6.0	6.0	창원시				
53	기정	진해구	태백동	22 - 7	답	19.0	19.0	창원시				
54	기정	진해구	태백동	24 - 2	대	10,950.0	10,950.0	창원시				지적분할 결과반영
	변경					10,940.0	10,940.0					1=120

~1.U	7 14	소재지		-13	-1 17	면적(m')		소유자		소· 이외의	유권 의 권리	
연면	구분	구	동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기정	2) -3) 7	-1 wl T	04 050		101.0	101.0	=1 o) v)				지적분할
55	변경	신해子	태백동	24 - 358	도	100.0	100.0	창원시				결과반영
56	기정	진해구	태백동	26 - 32	과	4,916.0	4,916.0	창원시				
57	기정	진해구	태백동	26 - 44	답	3,902.0	3,902.0	창원시				
58	기정	진해구	태백동	26 - 66	도	37.0	37.0	국토교통부				
59	기정	기체그	태백동	26 - 67	도	47.0	47.0	국토교통부				소유자
39	변경	센에기	네곡동	20 - 07	工	47.0	47.0	창원시				변경
60	기정	지체그	태백동	26 - 68	도	87.0	87.0	국토교통부				소유자
00	변경	센애구	네딱중	20 - 08	工	07.0	81.0	창원시				변경
61	기정	진해구	리베도	26 - 69	도	11.0	11.0	국토교통부				소유자
01	변경	겐에기	네ㅋㅎ	20 - 09	.1.	11.0	11.0	창원시				변경
62	기정	진해구	태백동	26 - 71	임	510.0	510.0	창원시				
63	기정	진해구	태백동	26 - 74	답	926.0	926.0	창원시				
64	기정	진해구	태백동	26 - 75	답	8,956.0	8,956.0	창원시				
GE	기정	진해구	티베도	96 76	_	2 4EE 0	9.4EE 0	국토교통부				소유자
65	변경	선애구	대백농	26 - 76	도	2,455.0	2,455.0	창원시				변경
66	기정	진해구	태백동	26 - 77	임	2,589.0	2,589.0	창원시				
67	기정	진해구	태백동	32 -	대	225.0	225.0	창원시				
68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답	1,196.0	1,196.0	창원시				
69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8	전	501.0	501.0	창원시				
70	기정	진해구	리베도	33 - 15	도	490.0	490.0	국토교통부				소유자
/0	변경	겐메ㅣ	네ㅋㅎ	33 - 13		490.0	490.0	창원시				변경
71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19	대	49.0	49.0	창원시				
72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23	전	268.0	268.0	창원시				
79	기정	진해구	리베드	33 - 27	도	238.0	220.0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및
73	변경	신애ㅜ	대백당	33 <sup>-</sup> 21	포	221.0	221.0	창원시				및 소유자 변경
74	기정	·진해구	리베드	22 20	_	9740	974.0	국토교통부				소유자
74	변경	신애干	대백궁	33 - 28	도	274.0	274.0	창원시				변경
75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29	도	1.0	1.0	국토교통부				
70	기정	71217	데베드	20 00		101.0	101.0	국토교통부				소유자
76	변경	진해구	태맥동	33 - 30	도	101.0	101.0	창원시				변경
	기정	2) -n -	ell mi r	00 01		00.0	00.0	국토교통부				소유자
77	변경	진해구	태맥농	33 - 31	도	39.0	39.0	창원시				변경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36	도	45.0	4.0	창원시				지적분할
78	변경	진해구	태백동	34 - 38	도	4.0	4.0	창원시				결과반영
79	변경	진해구	태백동	108	구	15.0	15.0	국토교통부				누락필지 편입

											1 2	유권	
연번	구분	소기	<b>해지</b>		지번	 지목	면적	(m')		소유자		ㅠ면 의 권리	비고
22	1.5	구	동		시킨	717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0	기정	7] <del></del> ]] 7	태백동		108- 1	구	1,000,0	1,000,0	국토교통부				소유자
80	변경	[신애丁	대백동		108-1	T	1,008.0	1,008.0	창원시				변경
81	기정	<b>⊅</b> ]≈]] ⊃	태백동		108-4	_	20000	2000.0	국토교통부				소유자
81	변경	[신애구	대백동		108-4	구	2,099.0	2,099.0	창원시				변경
82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11 - 10	임	4,165.0	4,165.0	창원시				
83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11 - 33	임	30.0	30.0	창원시				
84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11 - 55	임	261.0	261.0	창원시				
85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11 - 56	임	7,480.0	7,480.0	창원시				
86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52 - 6	임	1,785.0	1,785.0	창원시				
87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52 - 105	임	9,223.0	9,223.0	창원시				
88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52 - 118	임	1,499.0	1,499.0	창원시				
89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52 - 136	도	833.0	833.0	국토교통부				
90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52 - 137	임	1,653.0	1,653.0	창원시				
91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52 - 141	임	5,637.0	5,637.0	창원시				
	기정	7) 2) 7	리베드	21	F0 100	_	72040	7.004.0	국토교통부				소유자
92	변경	[신해구	태백동	산	52 - 166	도	7,384.0	7,384.0	창원시				변경
93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52 - 169	임	4,742.0	4,742.0	창원시				
94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123	구	1.0	1.0	국토교통부				

## 2.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도로, 광장)(변경)

લમા	구분	소기	해지	지번	지목		면적(m')		소	유자		유권 리 권리	비고
민민	TT	구	동	기원	기도	대장면적	편입면적	사업시행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포
7]	정		합	계		775,064.7	38,797.2	8,168.6					
변	경		月	Al		769,280.7	38,793.6	8,022.0					
1	기정	진해구	태백동	26 - 66	М	3,674.0	3,420.0	-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1	변경	진해구	태백동	26 - 80	И	3,637.0	3,420.0	-	국토교통부				결과반영
2	기정	진해구	태백동	26 - 76	H	2,510.0	55.0	-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및
	변경	진해구	태백동	26 - 81	보	55.0	55.0	-	창원시				소유자 변경
3	기정	진해구	태백동	27 - 1	도	782.0	65.0	-	국토교통부				
4	기정	진해구	태백동	30	전	364.0	1.0	-	국방부				
5	기정	진해구	태백동	31 - 2	도	691.0	691.0	-	국토교통부				
6	기정	진해구	태백동	31 - 4	도	1,160.0	230.7	-	국방부				
7	기정	진해구	태백동	31 - 7	도	147.0	147.0	-	기획재정부				
8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5	전	727.0	219.8	-	강*환	진해시 여좌동 76*-**			
9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6	전	36.0	36.0	_	국토교통부				

CH WI	구분	소기	해지	지번	지목		면적(m')		ব	유자	소- 이외의	유권 리 권리	nj
쒼민	十七	구	동	시민	시폭 	대장면적	편입면적	사업시행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10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7	전	188.0	114.9	-	유규중	진해시 숭인동			
11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9	도	412.0	412.0	-	국토교통부				
12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26	도	1.0	1.0	-	국토교통부				
13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11	전	288.0	6.4	-	김*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13길 **-* ***호	진해 동부 용동동합 조합	경상남 도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143번 길 2	지상권
14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12	도	50.0	26.4	-	국토교통부				
15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16	도	10.0	10.0	-	국토교통부				
16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17	노	182.0	182.0	-	국토교통부				
17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18	দ	45.0	45.0	-	국토교통부				
18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20	৸	1,089.0	1,089.0	_	국토교통부				
19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21	도	76.0	72.3	-	국토교통부				
20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22	도	573.0	567.5	-	국토교통부				
21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24	도	137.0	137.0	-	국토교통부				
22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25	도	15.0	15.0	-	창원시				
00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27	도	238.0	18.0	-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및
23	변경	진해구	태백동	33 - 32	도	17.0	17.0	-	창원시				소유자 변경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28	도	287.0	13.0	-	국토교통부				
24	변경	진해구	태백동	33 - 33	도	10.0	10.0	-	창원시				지적분할 및
25 26	변경	진해구	태백동	33 - 34	도	2.0	2.0	-	창원시				소유자 변경
	변경	진해구	태백동	33 - 35	도	1.0	1.0	-	창원시				
~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29	도	54.0	53.0	-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27	변경	진해구	태백동	33 - 36	도	53.0	53.0	-	국토교통부				결과반영
00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30	도	104.0	3.0	-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및
28	변경	진해구	태백동	33 - 37	도	3.0	3.0	-	창원시				소유자 변경
	기정	진해구	태백동	33 - 31	도	40.0	1.0	-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및
29	변경	진해구	태백동	33 - 38	도	1.0	1.0	-	창원시				소유자 변경
30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전	78.0	21.4	-	기획재정부				
31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1	전	163.0	163.0	163.0	창원시				
32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2	전	216.0	53.7	-	기획재정부				
33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5	도	246.0	184.7	-	기획재정부				
34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6	전	116.0	67.4	-	기획재정부				
35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7	전	178.0	178.0	-	기획재정부				
36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8	전	16.0	16.0	-	기획재정부				
37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9	도	368.0	368.0	-	기획재정부				

dн	구분	소7	해지_	지번	지목		면적(m')		소 <del>-</del>	유자	소- 이외9	유권 내 권리	비고
핀빈	TE	구	동	기원	\   	대장면적	편입면적	사업시행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포
38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10	도	42.0	42.0	-	기획재정부				
39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11	도	410.0	410.0	-	기획재정부				
40	기정	→1 =11 ¬	리베트	24 00		1100	1100	122.0	71011				지적분할
40	변경	진해구	태백동	34 - 29	도	110.0	110.0	110.0	창원시				결과반영
41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12	도	16.0	16.0	16.0	창원시				
42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13	전	69.0	69.0	69.0	창원시				
43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14	전	81.0	81.0	81.0	창원시				
44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15	도	107.0	107.0	-	기획재정부				
45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16	도	16.0	16.0	16.0	창원시				
46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24	도	358.0	358.0	-	기획재정부				
47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25	도	40.0	40.0	-	기획재정부				
48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26	도	43.0	43.0	-	기획재정부				
49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27	도	2.0	2.0	2.0	창원시				
50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28	도	68.0	68.0	-	기획재정부				
F1	기정		리베드	24 20	_	101.0	101.0	104.0	51.01.11				지적분혁
51	변경	진해구	태백동	34 - 30	도	101.0	101.0	101.0	창원시				결과반역
52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32	대	16.0	16.0	16.0	창원시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24	도			150.0	기획재정부				
53 54	변경	진해구	태백동	34 - 33	도	83.0	83.0	83.0	창원시				지적분회
54 55	변경	진해구	태백동	34 - 35	도	23.0	23.0	23.0	창원시				결과반약
	변경	진해구	태백동	34 - 36	도	41.0	41.0	41.0	창원시				
-c	기정	-1-i) -7	리베트	24 24	_	7- 0	75.0	81.0	51011				지적분형
56	변경	진해구	태백동	34 - 34	도	75.0	75.0	75.0	창원시				결과반역
57	기정	진해구	태백동	34 - 37	도	6.0	6.0	-	창원시				
58	기정	진해구	태백동	35	전	249.0	232.5	-	기획재정부				
59	기정	진해구	태백동	35 - 1	전	56.0	41.3	-	기획재정부				
60	기정	진해구	태백동	35 - 2	도	72.0	72.0	-	기획재정부				
61	기정	진해구	태백동	35 - 3	전	13.0	13.0	-	기획재정부				
62	기정	진해구	태백동	35 - 4	전	5.0	5.0	-	기획재정부				
63	기정	진해구	태백동	35 - 5	도	25.0	25.0	-	기획재정부				
64	기정	진해구	태백동	36 - 15	도	582.0	575.0	-	국토교통부				
65	기정 변경	진해구	태백동	36 - 16	도	238.0	127.9	18.0	국토교통부				사업시* 면적제\$
66	기정	진해구	태백동	36 - 17	도	271.0	271.0	-	국토교통부				
67	기정	진해구	태백동	36 - 18	도	179.0	179.0	-	국토교통부				
68	기정	진해구	태백동	36 - 23	도	150.0	112.7	-	기획재정부				

연번	그ㅂ	소지	NA	지번	지목		면적(m')		소	유자	소식	유권 리 권리	비고
핀텐	TE	구	প	기원	기독	대장면적	편입면적	사업시행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포
69	기정	진해구	태백동	36 - 24	도	129.0	116.0	-	기획재정부				
70	기정	진해구	태백동	36 - 28	도	278.0	17.0	-	국토교통부				
71	기정	진해구	태백동	36 - 33	도	2.0	2.0	-	기획재정부				
72	기정	진해구	태백동	36 - 37	도	463.0	124.8	-	기획재정부				
73	기정	진해구	태백동	36 - 38	도	13.0	4.0	-	기획재정부				
74	기정	진해구	태백동	36 - 39	도	51.0	33.4	-	기획재정부				
<i>7</i> 5	기정	진해구	태백동	37 - 1	h	879.0	292.9	-	국토교통부				
76	기정	진해구	태백동	108 -	구	1,502.0	527.7	-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10	변경	진해구	태백동	108 - 5	구	1,487.0	527.7	-	국토교통부				결과반영
77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42 - 1	임	94.0	94.0	-	기획재정부				
78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42 - 7	거	748.0	748.0	-	국토교통부				
79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42 - 9	도	4,955.0	3,755.0	-	국토교통부				
80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42 - 11	도	620.0	257.7	=	국토교통부				
81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42 - 14	임	45.0	45.0	55.0	* 창원시				지적분할
01	변경	[ 신애丁	대백중	간 42 - 14	)H	40.0	40.0	45.0	경전시				결과반영
82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42 - 15	ŀП	83.0	83.0	98.0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02	변경	전에	5	판 42 - 15	ㅗ	00.0	83.0	83.0	42264				결과반영
83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42 - 16	임	93,0	93.0	92.0	· 창원시				지적분할
လ	변경	선애기	দাশত	전 42 - 10	H	95.0	95,0	93.0	(3전시				결과반영
84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42 - 17	H	1,167.0	1,167.0	1,199.0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04	변경	센에기	দানত	건 42 - 17	7	1,107.0	1,107.0	1,167.0	45567				결과반영
85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42 - 19	임	167.0	167.0	173.0	창원시				지적분할
ω	변경	전에 [	5	건 42 - 19	П	107.0	107.0	167.0	' 8번시				결과반영
86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47 - 9	দ	3,519.0	46.2	-	창원시				
87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52 - 3	입	664,038.0	329.8	-	국방부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52 - 4	입	14,313.0	610.2	-	창원시				
88 89	변경	진해구	태백동	산 52 - 4	입	9,376.0	474.1	-	창원시				지적분할 결과반영
	변경	진해구	태백동	29 - 1	구	4,937.0	136.1	-	창원시				
90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52 - 136	Ы	44,627.0	8,503.1	-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90	변경	진해구	태백동	산 52 - 174	片	43,794.0	8,503.1	-	국토교통부				결과반영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52 - 139	임			317.0	창원시				
91 92	변경	진해구	태백동	산 52 - 167	임	282.0	282.0	282.0	창원시				지적분할 결과반영
	변경	진해구	태백동	산 52 - 168	임	40.0	40.0	40.0	창원시				
93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122-	구	1,755.0	305.0	-	국토교통부				
94	기정 변경	진해구	태백동	산 122-1	구	36.0	36.0	38.0 36.0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결과반영

연번	구브	소기	해지 	지번	지목		면적(m')		소	유자	소 <del>.</del> 이외	유권 내 권리	비고
핀빈	TE	구	প	기원	기독	대장면적	편입면적	사업시행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0=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123-	구	2,616.0	111.3	-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95	변경	진해구	태백동	산 123-1	구	2,615.0	111.3	-	국토교통부				결과반영
96	기정	진해구	태백동	산 137-	구	533.0	82.8	-	국토교통부				
97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1	전	80.6	80.6	50.6	· 창원시				지적분할
91	변경	전에 1	역과 5	5 - 1	겐	80.0	00.0	80.6	78 현기				결과반영
98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2	대	39.8	39.8	39.8	창원시				
99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3	전	49.7	49.7	49.7	창원시				
100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4	전 전	60.7	59.7	59.7	창원시				지적분할
100	변경	2-111	1-10			60.3	60.3	60.3	0.2.1				결과반영
101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5	도	7.4	7.4	-	창원시				
102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8	대	165.7	165.7	165.7	창원시				
103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9	답	129.4	23.4	23.4	· 창원시				지적분할
	변경		, , ,			23.0	23.0	23.0	0 2 /				결과반영
104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11	답	349.9	109.0	109.0	창원시				지적분할
	변경					108.7	108.7	108.7					결과반영
105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20	도	4.3	4.3	-	국토교통부				
106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21	도	2.4	2.4	-	국토교통부				
107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22	도	155.1	139.1	135.0	창원시				지적분할
108	변경	진해구	여좌동	5 - 22	도	136.0	136.0	136.0	창원시				결과반영
	변경	진해구	여좌동	5 - 40	도	2.6	2.6	-	창원시				
109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23	대	202.0	202.0	200.0	창원시				지적분힐 결과반영
	변경							202.0					교기인 0
110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24	대	16.5	16.5	16.0	창원시				지적분힐 결과반영
	변경							16.5					2160
111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28	대	253.7	253.7	258.0	창원시				지적분힐 결과반영
	변경					200.4	m 4	253.7					
112	기정 변경	진해구	여좌동	5 - 29	답	269.4 99.9	99.4	99.9	창원시				지적분힐 결과반영
	기정	진해구	여좌동	5 - 30	도	42.3	19.3	13.0	국토교통부				
113	<u>기</u>	진해구	여좌동	5 - 30	도	13.6	13.6	13.6	국토교통부				지적분힘
114	변경	진해구	여좌동	5 - 41	도	4.7	4.7	-	국토교통부				결과반영
	기정	진해구	, , -	5 - 31	도	52.1	5.1	-	국토교통부				-1-1-1
115	변경	진해구	여좌동	5 - 39	도	3.5	3.5	-	국토교통부				지적분힐 결과반영
	기정	- 11	, , ,			3.3		56.0					기기 H 주
116	· 년경	진해구	여좌동	138 - 3	도	55.4	55.4	55.4	국토교통부				지적분힐 결과반영
117		진해구	여좌동	185 - 1	도	43.0	43.0	-	기획재정부				

dн	구분	소지	해지	지번	지목		면적(m')		소	유자	소 <sup>4</sup> 이외의	유권 ] 권리	비고
핀텐	⊺ਦ	구	동	기원	/시 <u>두</u>	대장면적	편입면적	사업시행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2
118	기정	진해구	여좌동	185 - 2	도	130.8	130.8	-	기획재정부				
119	기정	진해구	여좌동	185 - 3	도	10.2	10.2	-	기획재정부				
120	기정	진해구	여좌동	185 - 4	전	30.7	30.7	30.7	창원시				
121	기정	진해구	여좌동	185 - 6	도	41.1	41.1	-	국토교통부				
122	기정	진해구	여좌동	185 - 9	도	1.2	1.2	-	국토교통부				
123	기정	진해구	여좌동	185 - 10	임	25.8	25.8	25.8	창원시				
124	기정	진해구	여좌동	185 - 43	도	6.0	6.0	6.0	창원시				
125	기정	진해구	여좌동	185 - 44	도	215.0	215.0	-	기획재정부				
126	기정	진해구	여좌동	185 - 45	도	2.5	2.5	-	기획재정부				
127	기정 변경	진해구	여좌동	185 - 46	도	28.5	28.5	33.0 28.5	창원시				지적분할 결과반영
128	기정	진해구	여좌동	185 - 47	도	45,2	45.2	45.0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120	변경	건에기	740	100 47	-1-	40.2	40.2	45.2	42207				결과반영
129	기정	진해구	여좌동	185 - 48	전 전	532.7	532.7	527.0	창원시				지적분할
120	변경	6-111	1-10	160 10	-	002.1	002.1	532.7	061				결과반영
130	기정	진해구	여좌동	185 - 49	대	33.3	33.3	33.0	창원시				지적분할
	변경	_ ",	, , ,		,,			33.3					결과반영
131	기정	진해구	여좌동	185 - 50	도	25.5	25.5	26.0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결과반영
	변경							25.5					근취단 6
132	기정	진해구	여좌동	185 - 52	전	24.3	24.3	24.0	창원시				지적분할 결과반영
	변경							24.3					
133	기정 변경	진해구	여좌동	185 - 53	묘	47.7	47.7	48.0	창원시				지적분할 결과반영
	기정							223.0					1-111-1
134	변경	진해구	여좌동	185 - 54	전	226.1	226.1	226.1	창원시				지적분할 결과반영
	기정							29.0					기거ㅂ칭
135	변경	진해구	여좌동	185 - 55	전	28.6	28.6	28.6	창원시				지적분할 결과반영
	기정							32.0					지적분할
136	변경	진해구	여좌동	185 - 56	임	32.3	32.3	32.3	창원시				결과반영
100	기정	-1-2-		105 55	,,	10.0	40.0	11.0	"1 61 - 1				지적분할
137	변경	진해구	여좌동	185 - 57	대	12.0	12.0	12.0	창원시				결과반영
138	기정	진해구	여좌동	105 50	г	1547	1547	178.0	창원시				지적분할
158	변경	[ 신애丁 	어와 등	185 - 58	도	154.7	154.7	154.7	상 전시				결과반영
130	기정	진해구	여좌동	185 - 59	도	36.2	36.2	38.7	창원시				지적분할
193	139 변경	(교에기	71-17-5	100 - 09		30.4	30.2	36.2	6건기				결과반영

фh	구분	소기	N기	지번	지목		면적(m')		소	유자	소· 이외	유권 1 권리	비고
ଅଅ	丁ゼ	구	동	시민	기숙	대장면적	편입면적	사업시행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꼬
1.40	기정	7] 23] 7	시키드	100 49	-11	01.0	01.0	22.0	=1.01 x1				지적분할
140	변경	진해구	여좌동	186 - 43	대	21.3	21.3	21.3	창원시				결과반영
141	기정	진해구	여좌동	186 - 44	도	21.7	21.7	21.7	국토교통부				
142	기정	진해구 -	여좌동	186 - 45	도	1.2	1.2	1.0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142	변경	건에기	740	160 40	حالت	1,2	1.2	1.2	4.5.6.1				결과반영
143	기정	진해구	여좌동	317 - 1	도	42.3	42.3	-	국토교통부				
144	기정	진해구	여좌동	317 - 2	도	61.8	61.8	-	국토교통부				
145	기정	진해구	여좌동	317 - 3	도	55.5	55.5	-	국토교통부				
146	기정	진해구	여좌동	317 - 6	도	8.6	8.6	-	국토교통부				
147	기정	진해구	여좌동	317 - 9	도	184.4	99.6	-	국토교통부				
148	기정	진해구	여좌동	317 - 10	도	146.7	124.6	-	국토교통부				
149	기정	진해구	여좌동	318 - 3	도	98.2	59.0	-	국토교통부				
150	기정	진해구	여좌동	318 - 5	도	85.3	85.3	-	국토교통부				
151	기정	진해구	여좌동	318 - 6	도	107.8	107.8	-	국토교통부				
152	기정	진해구	여좌동	318 - 7	도	39.3	27.3	-	국토교통부				
153	기정	진해구	여좌동	318 - 8	도	22.8	22.8	-	국토교통부				
154	기정	진해구	여좌동	318 - 9	도	39.6	35.2	-	국토교통부				
155	기정	진해구	여좌동	318 - 10	도	175.5	162.9	-	국토교통부				
156	기정	진해구	여좌동	319 - 1	도	19.5	19.5	-	국토교통부				
157	기정	진해구	여좌동	319 - 2	도	90.9	90.9	-	국토교통부				
158	기정	진해구	여좌동	319 - 3	도	16.2	16.2	-	국토교통부				
159	기정	진해구	여좌동	319 - 4	도	442.3	367.6	-	국토교통부				
160	기정	진해구	여좌동	319 - 5	도	26.1	26.1	-	국토교통부				
161	기정	진해구	여좌동	320 - 1	전	62.8	14.8	=	국토교통부				
162	기정	진해구	여좌동	320 - 4	임	347.8	23.7	=	국토교통부				
163	기정	진해구	여좌동	321 - 1	도	6.3	6.3	-	국토교통부				
164		진해구		321 - 2	도	2.3	0.3	-	국토교통부				
165	기정	진해구	여좌동	321 - 3	도	19.0	10.8	-	국토교통부				
166	기정	진해구	여좌동	321 - 5	도	48.2	17.9	-	국토교통부				
167	기정	진해구	여좌동	933 - 6	도	533.4	87.6	-	국토교통부				
168	기정 변경	진해구	여좌동	933 - 19	도	2,937.4	1,519.0	691.7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결과반%
169	기정 변경	진해구	여좌동	933 - 58	도	218.8	218.8	- 218.8	국토교통부				지적분힐 결과반영
170	기정 변경	진해구	여좌동	933 - 60	도	419.3	419.3	- 419.3	국토교통부				지적분힐 결과반영

Al ul	7 13	소기	<b>내</b> 지	-) u)	-) <del>-</del>		면적(m')		소	:유자	소 <del>.</del> 이외의	유권 김 권리	ul –
선턴	구분	구	동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사업시행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171	기정	진해구	여좌동	924 - 61	도	441.8	441.8	441.8	창원시				
172	기정	진해구	여좌동	924 - 68	철	369.7	369.7	369.7	창원시				
173	기정	진해구	여좌동	924 - 69	철	133.0	133.0	133.0	창원시				
174	기정	진해구	여좌동	924 - 70	철	461.1	461.1	461.1	창원시				
175	기정	진해구	여좌동	924 - 71	철	597.5	597.5	597.5	창원시				
176	기정	진해구	여좌동	924 - 79	철	0.7	0.7	0.7	국토교통부				
177	기정	진해구	여좌동	925 - 172	대	1.0	1.0	1.0	창원시				
178	기정	진해구	여좌동	927 - 187	দ	1,227.8	31.3	31.3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110	변경	[센대丁	পুনার	941 - 101	_ <u>.</u>	31.4	31.4	31.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결과반영

## ◉ 창원시 공고 제2023-1037호

## 창원도시계획시설(감계2근린공원 시설 개선공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창원시 고시 제2022-98호(2022.05.19.)로 실시계획 고시된 창원도시계획시설(감계2근린공원 시설 개선공사)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8일

창 원 시 장

### 1. 공사 완료내용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의창구 북면 감계리 286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창원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감계2근린공원 시설 개선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1,000 m²

- 규 모 : 게이트볼장 차양시설 594㎡, 관리동 43㎡, 측구수로관 5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창원시장(의창구 산림농정과)

-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마. 사업기간 : 2022.05.19. ~ 2023.05.31.

2.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055-225-7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창원시 공고 제2023-1088호

# 창원도시계획시설(흰돌메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08-226호(2008. 6. 5.)로 최초 결정된 창원도시계획시설(흰돌메공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8일

## 창 원 시 장

#### 1. 실시계획 작성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산4-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흰돌메공원)사업 - 명칭 : 흰돌메공원 숲 하늘길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7.683.0 m²

- 규모 : 유희시설 534㎡, 휴양시설 3.997㎡, 도로 및 광장 320㎡, 녹지 및 기타 2.83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 주소 :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123, 공원녹지과(지귀동)

마.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붙임

사. 관계도서 : 실음생략(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비치)

###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장소 :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비치 나. 열람기간 : 2023. 6. 8. ~ 2023. 6. 22.(14일간)

###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3. 6. 8. ~ 2023. 6. 22.(14일간)

나.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다. 기타 상세하게 문의하고 싶으신 분은 창원시청 공원녹지과(055-225-70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2	는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사용면적	소유자	비고
단인	시・군	구	리・동	시킨	시트	(m²)	( m²)	ユガベ	1172
1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산4-1	도	10,399.0	1,533.0	창원시	
2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산4-4	임	6,150.0	6,150.0	창원시	
		합	계			16,549.0	7,683.0		

## ● 진주시 공고 제2023-1599호

### 진주도시계획시설(소로문산2-11호선)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진주시 문산읍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문산2-11호선)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3년 6월 8일

## 진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 :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47-20번지 일원 (변경없음)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진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소로 문산 2-11호선(서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결정규모			금회	시행	최초결정일	비고
\\\\\\\\\\\\\\\\\\\\\\\\\\\\\\\\\\\\\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퍼조설 78 년	11111
도로	소로	문산2	11	8	416	8	126	경고 제417호 (2012.10.4.)	

※ 지형여건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토지 이동사항 반영

###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진주시장

○ 주소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변경없음)

○ 착수 : 2023. 4. 27.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와 관계인의

주소, 성명: 붙임(변경:적서)

7.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진주시청 도시계획과

9.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에서 서면제출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도로과(☎055-749-8791) 및 도시계획과(☎055-749-8867)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토지): (변경:적서)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자	
일덕	브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m²)	면적 (m²)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ž	· 계	기정	17필/	रो	6,013	1,047					
E	i /1	변경	18필기	<b>v</b> ]	3,104	1,028					
1	기정	문산읍 소문리	147-20	도	2179	116	진주시				
	변경	문산읍 소문리	147-20	도	2179	103	진주시				
2	기정	문산읍 소문리	153-15	대	544	43	한이일	진양군 문산읍 소문리			
	변경	문산읍 소문리	153-137	대	20	20	한이일	진양군 문산읍 소문리			
3	기정	문산읍 소문리	153-79	대	217	66	임ㅇ우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길27번길			
3	변경	문산읍 소문리	153-140	대	90	90	임ㅇ우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길27번길			
4	기정	문산읍 소문리	153-16	대	364	110	강ㅇ욱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길			
4	변경	문산읍 소문리	153-138	대	112	112	강ㅇ욱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길			
5	기정	문산읍 소문리	153-80	대	168	113	최ㅇ문	진양군 문산읍 소문리			
	변경	문산읍 소문리	153-142	대	104	104	최이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서로			
6	기정	문산읍 소문리	153-5	대	20	7			김ㅇ상ㅇ		토지대장 상 소유자
	변경	문산읍 소문리	153-135	대	13	13	미등기		김ㅇ상ㅇ		토지대장 상 소유자
7	기정	문산읍 소문리	2375-8	도	277	18	국 (농림수산부)				
1	기정	문산읍 소문리	2375-9	도	17	17	국 (농림수산부)				

د الاحداد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자			
일련	현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m²)	면적 (m²)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9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기정	문산읍 소문리	148-47	대	221	120	김ㅇ은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ㅇ진주ㅇ마ㅇ금고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	근저당권	
0	변경	문산읍 소문리	148-103	대	99	99	김ㅇ은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9	기정	문산읍 소문리	148-32	대	393	101	조ㅇ호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Э	변경	문산읍 소문리	148-99	대	95	95	조0호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기정	문산읍 소문리	148-33	대	225	128	이 0 원	경상남도 진주시	○씨○이○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근저당권	
			148-33					문산읍 소문길	민ㅇ수	경상남도 진주시 초북로	근저당권	
10	변경	문산읍 소문리	148-101	대	130	130	이ㅇ원		○씨○이○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근저당권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길	민ㅇ수	경상남도 진주시 초북로	근저당권	
									제ㅇ길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길	근저당권	
11	기정	문산읍 소문리	148-31	대	499	16	○한○수교○로 회○양○회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엘○마○금고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근저당권	
11	변경	문산읍 소문리	148-98	대	3	3	ㅇ한ㅇ수교ㅇ로 회ㅇ양ㅇ회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ㅇ엘ㅇ마ㅇ금고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근저당권	
	기정	문산읍	148-67	대	62	30	김 o 식 (12/356)	진양군 문산면 소문리				
12		소문리	140 07	41	02	30	김 o 순 (344/356)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ㅇ산ㅇ마ㅇ금고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근저당권	
12	변경	문산읍	148-107	대	54	54	우ㅇ준 (12/356)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길43번길				
	11.0	소문리	140 107	91	54	J4	김 o 순 (344/356)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ㅇ산ㅇ마ㅇ금고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근저당권	
13	기정	문산읍 소문리	148-22	도	79	65	진주시					
13	변경	문산읍 소문리	148-97	도	46	46	진주시				권리의 종 및 내용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14	기정	문산읍 소문리	148-50	대	407	23	노이수	진양군 문산면 소문리			권리의 종- 및 내용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14	변경	문산읍 소문리	148-105	대	3	3	노ㅇ수	진양군 문산면 소문리				
	기정	문산읍 소문리	148-57	대	203	45	우o준 (1/2)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5							우o준 (1/2)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길 43번길	ㅇ산ㅇ업ㅇ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근저당권, 지상권	
10	변경	문산읍	148-106	대	73	73	우o준 (1/2)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1.0	소문리	소문리 우 ○ 준 (1/2)		우o준 (1/2)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길 43번길	ㅇ산ㅇ업ㅇ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근저당권, 지상권			
16	기정	문산읍 소문리	148-92	대	53	45	유ㅇ자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0	변경	문산읍 소문리	148-92	대	49	49	유ㅇ자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소	유 자	관 계 자			
일i	런번호	소재지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	기정	문산읍 소문리	148-12	대	102	1	김ㅇ식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길43번길	ㅇ민ㅇ마ㅇ금고	경상남도 진주시 촉석로	근저당권	
	제외											
17	변경	문산읍 소문리	153-136	대	3	3	김0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o산o업o동조합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근저당권	
18	변경	문산읍 소문리	148-108	대	14	14	강ㅇ길 (1/2) 김ㅇ실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길 17번길 경상남도 진주시				
		- 1					(1/2)	문산읍 소문길 17번길				

## ● 통영시 공고 제2023-1090호

## 통영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1차, 3차부지 공사완료 공고

우리시 고시 제2023-66호(2023. 5. 4.)로 최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통영시 명정동 886-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1차, 3차 사업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8일

## 통 영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통영시 명정동 886-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통영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
- 명칭: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 3. 사업의 규모 (전체 면적 307,878 m²)

○ 1차 사업면적: 58,949 m²

○ 3차 사업면적: 21,421 m²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성 명: 통영시장(자원순환과장)
- 주 소: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 5. 사업기간

- 1차: 2020. 3. 26. ~ 2023. 12. 31.
- 3차: 2020. 3. 26. ~ 2023. 12. 31.
- **6. 관계도서:** 게재생략
-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도시과(055-650-5634) 및 자원순환과(055-650-1323)에 문의 바람

### ● 사천시 고시 제2023-125호

## 사천 도시계획시설(시설:종합의료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2-217호(2022.10.13.)로 최종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시설:종합의료시설,도로)에 대하여 "삼천포서울병원 공작물 축조공사(주차장)"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8일

## 사 천 시 장

#### 1.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사천시 동금동 68-5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삼천포서울병원 공작물 축조공사(주차장)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당초 : 주차장 조성 A=2,505.8m²

- 변경 : 주차장 조성 A=2,606.0 m²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이승연(의료법인승연의료재단)주소: 경남 사천시 남일로 33(동금동)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5. 12. 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 2.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055-831-316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 편입토지조서(변경)

연 번	위		치		지	면 적(m²)					소 유 자			유권 외의  명세	권리의	时
	시	동	지번		목	대장		편입		성 명	2 )	원립 중 :	주소	─ 종류 및내용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78 78	주 소	성명	丁全		
1	사천	동금	-	68-2	대	-	100.2	-	100.2	100.2	박○민	경남 사천시 선구동 58-66				
2	1		<del>1</del> 143	143-5	주	775.2	445.7		445.7	_	의료법인 숭○의료재단	경남 사천시 남일로33				
3	사천	동금		143-6	도		329.5	775.2	329.5		사천시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4	사천	동금	68-5	68-5	주	220.2	220.2	220.2	220.2	-	의료법인 승○의료재단	경남 사천시 남일로33				
5	사천	동금	68-6	68-6	주	220.2	220,2	220.2	220.2	_	의료법인 승○의료재단	경남 사천시 남일로33				
6	사천	동금	68-8	68-8	주	212.9	212.9	194.8	194.8	-	의료법인 승○의료재단	경남 사천시 남일로33				
7	사천	동금	68-9	68-9	주	98.5	98.5	18.0	18.0	_	의료법인 승○의료재단	경남 사천시 남일로33				
8	사천	동금	70-1	70-1	주	166.9	166.9	166.9	166.9	-	의료법인 승○의료재단	경남 사천시 남일로33				
9	사천	동금	70-3	70-3	주	166.3	166.3	166.3	166.3	-	의료법인 승○의료재단	경남 사천시 남일로33				
10	사천	동급	70-4	70-4	주	242.0	242.0	242.0	242.0	-	의료법인 승○의료재단	경남 사천시 남일로33				
11	사천	동금	70-5	70-5	주	394.0	394.0	351.0	351.0	-	의료법인 승○의료재단	경남 사천시 남일로33				
12	사천	동급	70-6	70-6	주	173.2	173.2	151.2	151.2	_	의료법인 승○의료재단	경남 사천시 남일로33				
		합	계			2,669.4	2,769.6	2,505.8	2,606.0	100.2						

#### ● 양산시 고시 제2023-161호

#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계획도로 소1-93, 소1-12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양산시 호계동 산 112-4번지 일원 종성산업(주)에서 시행하는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계획도로 소1-93, 소1-12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6월 8일

# 양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남 양산시 호계동 산 112-4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0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도로)
  - o 명 청: (당초) 도시계획도로 소1-93, 소1-12호선 개설공사 (변경) 도시계획도로 소1-12호선 개설공사
- 3. 사업면적 및 규모(변경)
  - o 면적: (당초) A=12,647.4m², (변경) A=3,527.4m²
  - o 도시계획도로 소1-93호선 : (당초) L=129m B=10m, (변경) L=0m B=0m
  - o 도시계획도로 소1-12호선 : (당초) L=129m B=10m, (변경) L=216m B=11m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o 부산 남구 분포로 113, 201동 1803호(용호동, LG메트로시티) 종성산업(주) 조창제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o(당초) 2013. 5. 14 ~ 2022. 6. 30.
- o (변경) 2013. 5. 14 ~ 2023. 12. 31.

- 6. 변경사유 : 도로 선형 변경 및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기간 연장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명세(변경)

(당초)

						면	. 적(m²)				소유자	
일련	소재지	,					편입대	면적				
번호	(양산시)	지번		지목	대장 면적	3 - 9	도	로	도로	성명	주소	비고
					현역	전체	소1-93 호선	소1-12 호선	사면			
<u>ē</u>	<b>계</b>	5필~	:]		35,278.4	12,647.4	1,373.0	1,376.4	9,898.0			
1	호계동	1135		공	128.4	128.4		128.4		양산시		
2	호계동	산112	4	임	32,948	10,729.0	1,373.0	874.0	8,482.0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을지로1가)	명의 신탁
3	호계동	산112	7	임	1,028	1,028.0		374.0	654.0	비케이 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을지로1가)	
4	호계동	산112	13	임	1,055	643.0			643.0	비케이 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을지로1가)	
5	호계동	산112	14	임	119	119.0			119.0	비케이 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을지로1가)	

(변경)

						면 적	( m²)		소	유자	
일련 번호	소재지 (양산시)	   지번	<u>]</u>	지목	대장		편입면적			_	비고
민오	(공교사)				면적	전체	도로	도로 사면	성명	주소 주소	
ক্	할 계	6필기	۲)		52,562.8	3,527.4	2,614.4	913.0			
1	호계동	1035	35	장	1,413.0	1,004.0	649.0	355.0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을지로1가)	명의 신탁
2	호계동	1127		도	16,674.4	13.0	13.0	0.0	양산시		
3	호계동	1135		공	128.4	128.4	128.4	0.0	양산시		
4	호계동	산112	4	임	32,948.0	1,759.0	1,430.0	329.0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을지로1가)	명의 신탁
5	호계동	산112	7	임	1,028.0	252.0	252.0	0.0	비케이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을지로1가)	
6	호계동	산112	8	임	371.0	371.0	142.0	229.0	비케이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을지로1가)	

# ● 양산시 고시 제2023-164호

#### 양산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960-2번지 일원상 농어촌도로(원동324호선)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제12조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8일

# 양 산 시 장

#### 1.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7	모			*1 =1				7 4	-1 -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3	45	6	국지 도로	277	원동면 화제리 960-2 일원	원동면 화제리 2361 일원	일반 도로	-	양고 제40호 (2017.02.02)	
변경	소로	3	45	6	국지 도로	277	원동면 화제리 960-2 일원	원동면 화제리 2361 일원	일반 도로	_	양고 제40호 (2017.02.02)	

#### ■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 3-45호선		·면적 변경 (1,677㎡ → 1,714㎡, 중 37㎡)	·실시설계 결과 반영에 따른 일부 선형 및 면적 변경

#### 2.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개별토지의 지역·지구 등에 대한 사항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도로과 도로계획팀(☎ 055-392-2764),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055-392-2713)으로 무의하시기 바랍니다.

#### ● 양산시 고시 제2023-165호

#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양산시 신기동 425번지 일원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8일

# 양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양산시 신기동 425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o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방재시설) o명 칭: 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3. 사업규모
- o 도로: A=18,344.6m²
- o 주차장 및 유수지: A=1,822m²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o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장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o 2023. 6. 8  $\sim$  2026.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번	2 -11 -1	-lul	-1 17	지적	편입		소유	구자	소유권	<sup>년</sup> 이외의		н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면적 (m²)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신기동	173-14	도	40.3	1	경상남도						
2	신기동	173-15	대	146.9	104	양산시						
3	신기동	173-18	도	261	20	경상남도						
4	신기동	173-19	도	9	9	경상남도						
5	신기동	244-1	도	7,053.2	74	양산시						
6	신기동	301-12	전	102	6	양산시						
7	신기동	303	도	1,157	401	국(국토교통부)						
8	신기동	304-1	도	20	2	국(국토교통부)						Г
9	신기동	304-3	도	61	47	국(국토교통부)						
10	신기동	304-5	도	99	65	국(국토교통부)						Г
11	신기동	305-1	천	43	43	김용갑		475				Γ
12	신기동	305-3	도	251	130	국(국토교통부)						
13	신기동	309-2	도	221	77	국(국토교통부)						Γ
14	신기동	400-4	도	1,055	701	국(국토교통부)						Γ
15	신기동	408	천	972	192	양산시						Г
16	신기동	409-1	대	115	10	양산시						
17	신기동	409-10	제	98	72	주식회사경동 도시가스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진장동)				Ī
18	신기동	409-11	도	120	107	양산시		200 200 200				T
19	신기동	409-3	제	337	209	양산시						T
20	신기동	409-5	도	419	381	국(국토교통부)						Г
21	신기동	409-8	제	949	154	양산시						Ī
22	신기동	410-1	대	31	11	김영옥		511-3 대동서안한마음타운 106동 802호				
23	신기동	411-2	도	99	79	국(기획재정부)						Ī
24	신기동	412-3	대	40	24	정동택		부산동래구온천동399-11				
25	신기동	413-2	제	10	10	한국농어촌공사						Ī
26	신기동	413-3	졔	66	65	향임성남		경주시 성건동 219				Γ
27	신기동	413-7	제	111	6	지전원근		317				
28	신기동	414-2	제	159	117	한국농어촌공사						
29	신기동	414-3	제	83	83	향림성남		경주시 성건동 219				
30	신기동	414-5	제	152	56	지전원근		양산군 양산읍 신기리 317				
31	신기동	415-5	제	282	256	배기수		양산군 양산읍 북부동				Ī
32	신기동	415-6	제	132	120	이우봉		양산군 양산읍 북부동 190				
33	신기동	424-41	답	339	318	김귀현		부산 동래고 복천동 500-1 우성베스토피아 아파트 6동 905호				

번	ارد (اد ع	ગામા	-) L	지적	편입		소유	구자	소유	권 이외의 권		1
ই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면적 (m²)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34	신기동	424-42	답	339	339	김미국		부산 수영구 남천동 490 남천동원보라아파트 106동 303호				
						강경희	3/7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Ī
35	신기동	424-46	답	1,165	1,165	손준우	2/7	올림픽선수, 기자촌아파트				
						손정우	2/7	127-602				
36	신기동	425	구	1,546	134	국(농림축산 식품부)						
37	신기동	428-16	도	4	4	양산시						
38	신기동	428-26	답	4	4	양산시						
39	신기동	428-27	답	1	1	양산시						
40	신기동	428-28	답	14	14	양산시						
41	신기동	429	도	1,026	123	국(농림축산 식품부)						
42	신기동	430	구	1,010	142	국(농림축산 식품부)						
43	신기동	440-10	도	448	448	양산시						Ī
44	신기동	440-12	도	27	27	정상철		477				Ī
				조연미 1/10 양산시 신기동 511-3 대동서안한마음타운 106-303								
						조진웅	3/10	양산시 신기동 511-3 대동서안한마음타운 106-301	지 신기동 511-3 서안한마음타운 106-301 도 여수시 소호로 경상			
						조진미	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658 ,103동1203호 (학동,부영아파트)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서길	77-1	
45	신기동	440-13	도	46	46	조수미	1/10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서길 14, 106동 902호 (신기동, 대동서안한마음타운)	조유미		근저 당권	
						조유미	1/10	상남도 양산시 신기서길 14, 106동 301호(신기동, 대동서안한마음타운)				
						조진석	3/10	상남도 양산시 신기서길 14, 106동 301호(신기동, 대동서안한마음타운)				
46	신기동	442	구	301	26	국(농림축산 식품부)						Ī
47	신기동	509	도	9,929.5	59	양산시						Ī
48	신기동	576	천	27,644	2,730	국(국토교통부)						Ī
49	신기동	576-23	천	16	14	국(환경부)						
50	신기동	576-24	도	6	6	국(국토교통부)						ſ
51	신기동	576-25	천	4,326	263	국(국토교통부)						I
52	신기동	578-3	구	188	37	국(농림축산 식품부)						
53	신기동	588	구	989	213	국(농림축산 식품부)						Ī
54	신기동	588-1	제	654	211	국(국토교통부)						t

번	2 -11-1	-1.11	-17	지적	편입		소유	-자	소유권	년 이외의		1: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면적 (m²)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55	신기동	591-15	도	1	1	국(국토교통부)						
56	신기동	591-18	도	993	40	국(국토교통부)						
57	신기동	591-20	도	77	70	국(국토교통부)						
58	신기동	597	도	238	41	국(국토교통부)						
59	북부동	134-2	제	159	130	국(국토교통부)						Ī
60	북부동	134-6	제	329	240	양산시						
61	북부동	134-7	제	435	277	양산시						Ī
62	북부동	134-8	도	82	76	양산시						Γ
63	북부동	138-1	제	10	10	양산시						Γ
64	북부동	138-10	제	66	66	양산시						Ī
65	북부동	138-11	도	899	715	국(국토교통부)						Γ
66	북부동	138-12	제	40	40	국(국토교통부)						Ī
67	북부동	138-2	제	2,005	1,521	양산시						Ī
68	북부동	138-20	졔	51	51	양산시						Ī
69	북부동	138-21	제	2	2	양산시						T
70	북부동	138-3	제	46	46	국(국토교통부)						T
71	북부동	138-4	제	7	7	양산시						T
72	북부동	138-5	제	986	986	국(국토교통부)						T
73	북부동	138-6	도	158	120	양산시						T
74	북부동	138-7	전	1	1	김문관		부산 남구 광안동 170-22 동양주택 가동 202호	;			Ī
75	북부동	138-8	제	13	13	양산시		0 0 1 1 7 1 0 2023				Ť
76	북부동	138-9	도	43	43	양산시						Ť
77	북부동	139-2	도	192	120	국(국토교통부)						T
78	북부동	147-16	전	218	218	양산시						T
79	북부동	147-23	도	130	130	양산시						T
80	북부동	147-37	전	185	180	양산시						T
81	북부동	148-17	도	2,957	828	양산시						T
						김대치	3525/ 2025540	양산읍 북부동 249-3				T
						김춘자	4363/ 2025540	물금면 범어리 2030				T
						이윤정	7391/ 2025540 そ 4/25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172 동래한양맨션2동				İ
82	북부동	148-63	답	84	84	이수철	2178/ 2025540	107호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018-10				İ
						노미경	4356/ 2025540	신기동 269-11				
						박상근	5200/ 2025540	부산 금정구 부곡동 303-11				
						김명순	2178/ 2025540	부산 금정구 온천동 1018-10				

번	> -111	-111	-17	지적	편입		소유	-자	소유	권 이외의	권리	ㅂ`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면적 (m²)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고
						양산시	274851/ 278777					
						양산시	5543/ 2025540					
						이수철	2178/ 205540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018-10				
						노미경	4356/ 2025540	신기동 269-11				
						김대치	3525/ 2025540	양산읍 북부동 249-3				
						김춘자	4363/2025540	물금면 범어리 2030				
83	북부동	148-66	답	380	380	김명순	2178/ 2025540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18-10				
						이윤정	7391/ 2025540 중 4/25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172 동래한양맨션 2동107호				
						박상근	5200/ 2025540	부산 금정구 부곡동 303-11				
						양산시	49925361/ 50638500					
						양산시	5543/ 2025540					
84	북부동	520-1	구	1,840	17	국(농림축산 식품부)						
85	북부동	520-13	대	55	41	양산시						
86	북부동	656	천	16,778	1,584	국(국토교통부)						
87	북부동	665-2	도	61	39	국(국토교통부)						
88	북부동	665-25	제	66	66	국(국토교통부)						
89	북부동	665-26	제	67	67	국(국토교통부)						
90	북부동	703	도	6,110.2	726	양산시						
91	북부동	712-4	도	126.2	126.2	양산시						
92	북부동	712-5	도	65.4	65.4	양산시						
93	북부동	713	도	73	27	국(국토교통부)						
94	북부동	714	도	215	63	국(국토교통부)						
95	북부동	717	도	600.2	38	양산시						
96	북부동	789	도	3,146	907	국(국토교통부)						
97	신기동	428-17	답	2	2	김숙희						
98	신기동	428-25	답	5	5	김숙희						
99	신기동	428-20	답	5	1	김숙희						
		 합계		104,718.9	20.166.6			<u> </u>				

# ● 양산시 공고 제2023-1668호

#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북정9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양산시 북정동 3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북정9근린공원 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8일

# 양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남 양산시 북정동 32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o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근린공원)
- o 명칭: 북정9근린공원 조성사업
- 3. 사업규모: A=414,833m²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o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장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o 당초: 2020.06.25 ~ 2022.12.31.
- o 변경: 2020.06.25 ~ 2024.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붙임
- 7.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o 공고방법: 도 공보 게재
  - o 공고기간: 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 o 열람장소: 양산시청 도시계획과(☎055-392-2724)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ul =	> _i) →1	⇒lul	~) II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 자		이해관	계인	비
면오	소재지	지번	지목	( m²)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고
1	북정동	681-3	답	53	53	양산시					
2	북정동	682-2	전	61	61	양산시					
3	북정동	682-4	전	33	33	양산시					
4	북정동	683	전	166	166	양산시					
5	북정동	853-30	구	353	353	국(농림축산식품부)					
6	북정동	693-2	답	2,035	2,035	양산시					
7	북정동	853-25	구	297	297	국(농림축산식품부)					
8	북정동	694-1	임	308	308	양산시					
9	북정동	695-2	답	516	516	양산시					
10	북정동	696-1	임	35	35	양산시					
11	북정동	696	임	190	190	양산시					
12	북정동	694-2	임	197	197	양산시					
13	북정동	37-1	답	1,288	1,288	양산시					
14	북정동	산 47-2	임	23,834	23,834	양산시					
15	북정동	853-26	구	232	232	국(농림축산식품부)					
16	북정동	37	답	239	239	양산시					
17	북정동	산 39-4	임	9,892	9,302	양산시					
18	북정동	853-27	구	13	13	국(농림축산식품부)					
19	북정동	36	답	212	212	양산시					
20	북정동	853-28	구	271	271	국(농림축산식품부)					
21	북정동	산 39-6	임	739	739	양산시					
22	북정동	697-1	임	81	81	양산시					
23	북정동	35	답	2,929	2,929	양산시					
24	북정동	35-1	답	10	10	양산시					
25	북정동	산 47-1	임	1,818	1,818	양산시					
26	북정동	산 47-3	임	1,537	1,537	양산시					
27	북정동	산 48-3	임	3,925	3,925	양산시					
28	북정동	산 48-4	임	2,874	2,874	양산시					
29	북정동	산 48-2	임	37,490	37,490	양산시					
30	북정동	706-5	임	65	65	양산시					
31	북정동	659-3	임	24	24	양산시					
32	북정동	661	대	50	50	양산시					
33	북정동	706-1	임	8,355	8,355	양산시					
34	북정동	702-4	임	3,487	3,487	양산시					
35	북정동	695-1	답	1,018	1,018	양산시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자		이해관	계인	固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m²)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고
36	북정동	704-2	답	82	82	양산시					
37	북정동	704	답	195	195	양산시					
38	북정동	702	임	2,167	2,167	양산시					
39	북정동	697	임	6,197	6,197	양산시					
40	북정동	702-3	임	93	93	양산시					
41	북정동	698-1	임	357	357	양산시					
42	북정동	701	답	63	63	양산시					
43	북정동	853-4	구	866	866	국(농림축산식품부)					
44	북정동	699	답	701	701	양산시					
45	신기동	86	답	499	499	양산시					
46	북정동	698	임	4,503	4,503	양산시					
47	북정동	700	답	1,689	1,689	양산시					
48	북정동	698-2	임	366	366	양산시					
49	신기동	578-1	구	408	408	국(농림축산식품부)					
50	신기동	85	답	803	803	양산시					
51	북정동	34	임	1,211	1,211	양산시					
52	신기동	83	답	1,140	1,140	양산시					
53	북정동	34-1	임	171	171	양산시					
54	북정동	31	임	1,075	1,075	양산시					
55	신기동	84	답	264	264	양산시					
56	북정동	33-1	답	1,287	1,287	양산시					
57	북정동	33	답	234	234	양산시					
58	북정동	30	답	61	61	양산시					
59	북정동	30-1	답	61	61	양산시					
60	북정동	32	답	2,298	2,298	양산시					
61	북정동	31-1	임	753	753	양산시					
62	북정동	853-29	구	203	203	국(농림축산식품부)					
63	북정동	29	답	321	321	양산시					
64	북정동	산 52-5	임	1,095	1,095	양산시					
65	북정동	산 52-4	임	142	142	양산시					
66	신기동	87	답	13	13	양산시					
67	신기동	산 31	임	15,655	15,655	양산시					
68	신기동	산 30	임	198	198	양산시					
69	신기동	산 29	임	74,083	74,083	양산시					
70	북정동	산 54-2	임	10,810	10,810	양산시					
71	북정동	산 54-1	임	25,686	25,686	양산시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구자		이해관	계인	时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m²)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고
72	신기동	산 34-2	임	14,876	14,283	양산시					
73	신기동	산 34-1	임	11,504	11,025	양산시					
74	신기동	산 34-4	임	12,298	10,700	양산시					
75	신기동	산 36-3	임	8,529	102	양산시					
76	신기동	산 36-2	임	9,223	7,196	양산시					
77	신기동	산 27-1	임	6,050	6,050	양산시					
78	신기동	산 27-2	임	5,950	5,950	양산시					
79	북정동	26	답	1,521	1,521	양산시					
80	북정동	27	답	803	803	양산시					
81	북정동	28	답	221	221	양산시					
82	북정동	산 49	임	298	298	김소주	신기리103				
83	북정동	산 50	임	8,033	8,033	양산시					
84	북정동	산 51	임	397	397	허한녕	동면 석산리 264				
85	북정동	산 52-1	임	72,056	72,056	양산시					
86	북정동	산 52-2	임	2,281	2,281	양산시					
87	북정동	산 52-3	임	3,765	3,765	양산시					
88	북정동	산 53	임	694	694	김기석	신기리				
89	북정동	산 55	임	298	298	양산시					
90	북정동	산 56	임	3,669	3,669	양산시					
91	북정동	산 56-1	임	992	992	양산시					
92	신기동	129-1	답	3,089	3,089	양산시					
93	신기동	산 34-3	임	1,623	1,623	양산시					
	-	합계		428,547	414,833						

제2616호

2023. 6. 8.(목)

# ● 함안군 고시 제2023-57호

#### 함안군관리계획(시설-도로:소로3-101호선)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군 대산면 평림리 1110번지 일원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에 따른 의제사항으로 함안군공고 제2023-821호(2023. 5. 23.)로 승인·고시된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8일

# 함 안 군 수

#### 1.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도로 결정 조서

-7.33		규	모		-11-	연장	3 -3	<b>7</b> -)	사용	주 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신설	소로	3	101	6	국지 도로	218.2	대산면 평림리 1110	대산면 평림리 900-5	일반 도로		_	농어촌도로 101호선

####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101	·도로 신설 (B=6m, L=218.2m)	·대산면 평림리 평림마을에서 취무마을로 가는 농어촌도로 101호선 도로폭 협소로 교행이 불가하여 도로확포장을 통 하여 지역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코자함.

#### 2. 관계도면 : 실음생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도시건축과(055-580-2705) 및 건설교통과(055-580-2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산청군 고시 제2023-99호

####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산청군 고시 제2004-257호(2004. 7. 10.)로 최초 결정, 산청군 고시 제2022-134호(2022. 9. 1.)로 결정 (변경), 산청군 고시 제2023-11호(2023. 1. 12.)로 실시계획인가된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733번지 일원 군 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3년 6월 8일

# 산 청 군 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73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군계획시설(청소년수런시설: 옥산청소년수런시설)사업

• 명 칭: 청소년수련시설 내 다목적한마당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3,190 m² → 3,239 m²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합계 대 도 답		체	구	비고		
면적	기정	3,190	4	19	58	2,423	686	증) 49
( m²)	변경	3,239	8	20	68	2,423	720	등) 49

#### •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결정면적(m²)	言	·회시행면적(n	ŋ²)	비고
9 T E	설정한적(III)	기정	변경	변경후	H 75
합 계	16,250	3,190	증) 49	3,239	부분인가
복지타운	1,282	_		_	기인가
인라인스케이트장	2,820	2,820		2,820	
편의시설	5,745	_		_	
야외무대	220	220		220	공연장
녹지 및 기타	6,183	150	증) 49	199	

※ 변경사유: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제2616호 2023, 6, 8,(목)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산청군수

• 주 소: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2023.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여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	.적(m²)	편입면	적(m')		소유자	소유권	비고
선턴	조새시	기정	변경	시속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미끄
		계			17,297	13,520	3,190	3,239				
									지*수	진주시 상봉동 762 화인A, 10*-4-*호		
									지*자	진주시 봉곡동 1*-1		
1	산청읍 옥산리	725-3	725-8	답	98	68	58	68	김*선	진주시 <del>봉곡</del> 동 1*-1		
	무건니								오*종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5, 한양A *-30*호		
									지*두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5, 한양A *-30*호		
2	산청읍 옥산리	721-3	721-13	도	2,212	20	19	20	산청군			
2	산청읍	792 6	700 14	구	150	1.49	100	1.49	최*철	산청군 옥산리 37*		
3	옥산리	723-6	723-14	7	150	143	126	143	이*우	산청군 옥산리 44*-*		
4	산청읍 옥산리	723-11	723-15	대	961	8	4	8	산청군			
5	산청읍 옥산리	725	725	체	2,935	2,935	623	623	산청군			
6	산청읍 옥산리	725-2	725-6	구	504	462	454	462	산청군			
7	산청읍 옥산리	733	733	체	8,877	8,877	1,390	1,390	산청군			
8	산청읍 옥산리	735-1	735-3	구	70	8	5	8	산청군			
9	산청읍 옥산리	921-7	921-47	구	598	107	101	107	국(국토 교통부)			
10	산청읍 옥산리	921-41	921-41	체	892	892	410	410	산청군			

**7. 기타:** 관계도서는 산청군 지역발전과(055-970-7303, 7332)에 비치 열람.

# ● 산청군 고시 제2023-103호

# 산청군관리계획(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청군관리계획(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2023년 6월 8일

# 산 청 군 수

#### 1. 산청군관리계획 결정

- 1) 산청군관리계획(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붙임
- 2) 관계도면: 게재생략
- 2. 관계도서는 산청군청(지역발전과, 055-970-73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군관리계획(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군관리계획(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 치		면적(m²)		최초결정일	비고	
1 7 2	표시번호 구역명	7 7 7	T 4	기정	변경	변경후	의소설생 현	미끄	
기정	3	어서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생초면 어서리 293-2 일원	266,796	-	266,796	산고 제1994-94호 (94.05.25)	주거형	

#### 나.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m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3	어서지구	주거	생초면 어서리 293-2 일원	266,796	산고 제1994-94호 (94.05.25)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del>분</del>		면적(m')		구성비(%)	비고
	T	기정	변경	변경 후	十名中(%)	HT.
7	계	266,796	266,796 - 266,79		100.0	
주거	용지	135,991	-	135,991	51.0	
상업	용지	29,522	-	29,522	11.1	
녹지	용지	32,401	-	32,401	12.1	
공공	소계	68,882	-	68,882	25.8	
시설	학교	35,828	-	35,828	13.4	
용지	도로	33,054	=	33,054	12.4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1) 교통시설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총괄표(변경없음)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 열	노선수	연장(m)	면적(m²)	노선수	연장(m)	면적(m²)	노선수	연장(m)	면적(m²)	노선수	연장(m)	면적(m²)
합계	21	4,679	33,054	-	-	-	3	735	6,064	18	3,944	26,990
중로	2	1,382	13,096	-	-	-	-	-	-	2	1,382	13,096
소로	19	3,297	19,958	-	-	-	3	735	6,064	16	2,562	13,894

####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규	모			연장		_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기정	중로	3	1	12	주간선 도로	510	어서리 1007	어서리 990	일반 도로	산고 제1994-94호 (94.05.25)	
기정	중로	3	2	12	주간선 도로	872	어서리 245-25	어서리 78-5	일반 도로	산고 제1994-94호 (94.05.25)	
기정	소로	2	7	8	보조간선 도로	149	어서리 275	어서리 603	일반 도로	산고 제1994-94호 (94.05.25)	
기정	소로	2	8	8	보조간선 도로	462	어서리 475	어서리 385-4	일반 도로	산고 제1994-94호 (94.05.25)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24	어서리 990	어서리 362-2	일반 도로	산고 제1994-94호 (94.05.25)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90	어서리 562-3	어서리 568-2	일반 도로	산고 제1994-94호 (94.05.25)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132	어서리 87-4	어서리 545-5	일반 도로	산고 제1994-94호 (94.05.25)	
기정	소로	3	4	4	국지도로	239	어서리 92-1	어서리 458-1	일반 도로	산고 제1994-94호 (94.05.25)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41	어서리 990-3	어서리 351-5	일반 도로	산고 제1994-94호 (94.05.25)	
기정	소로	3	7	6	집산도로	235	어서리 342-16	어서리 450-2	일반 도로	산고 제1994-94호 (94.05.25)	

제2616호

2023. 6. 8.(목)

										•	
7 12		7	모		3.1	연장	3 -3	·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기정	소로	3	9	4	국지도로	200	중로 3-1	어서리 735-3	일반 도로	산고 제1994-94호 (94.05.25)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145	어서리 290-7	어서리 276-11	일반 도로	산고 제1994-94호 (94.05.25)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184	어서리 270-3	어서리 278-3	일반 도로	산고 제1994-94호 (94.05.25)	
기정	소로	3	15	6	국지도로	121	어서리 274-1	어서리 267-10	일반 도로	산고 제1994-94호 (94.05.25)	
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153	어서리 269-11	어서리 245-12	일반 도로	산고 제1994-94호 (94.05.25)	
기정	소로	3	18	4	국지도로	329	어서리 518-1	어서리 567	일반 도로	산고 제1994-94호 (94.05.25)	
기정	소로	3	19	4	국지도로	197	어서리 468-3	어서리 413-1	일반 도로	산고 제1994-94호 (94.05.25)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98	어서리 990	어서리 463-3	일반 도로	산고 제1994-94호 (94.05.25)	
기정	소로	3	24	4	국지도로	63	어서리 292	소로 3-9	일반 도로	산고 제1994-94호 (94.05.25)	
기정	소로	3	26	4	국지도로	85	어서리 245-1	어서리 247-1	일반 도로	산고 제1994-94호 (94.05.25)	
기정	소로	3	27	6	국지도로	150	어서리 990	어서리 990	일반 도로	산고 제1994-94호 (94.05.25)	

# ②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그ㅂ	도면 시설명 시설의 	시설의	위치		면적(m²)		최초결정일	비고	
구분 표시	표시번호	시설정	세분	TA	기정	변경	변경 후	의소설/8년	1111
기정	1	자동차 정류장	-	어서리 287-2번지 일원	2,631	-	2,631	산고 제1994-94호 (94.05.25)	

# 2) 공간시설

# ① 광장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ग्रीक्षण	시설의	위치		면적(m²)		최초결정일	비고
丁七	표시번호	호 시설명 세분 우		TA	기정	변경	변경 후		비포
기정	1	광장	-	어서리 338-1번지 일원	1,115	-	1,115	산고 제1994-94호 (94.05.25)	

#### ② 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m²)		최초결정일	비고	
丁正	표시번호	시설병	세분		기정	변경	변경 후	의소설/8월	비끄	
기정	20	생초 조각공원	문화공원	어서리 산93-15 일원	32,401	_	32,401	산고 제2006-829호 (06.12.8)		

# 3) 유통 및 공급시설

① 시장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²)		최초결정일	비고
	표시번호	시설병		カヘ	기정	변경	변경 후	의소설정될	미포
기정	1	시장	-	어서리 259 번지 일원	1,562	-	1,562	산고 제1994-94호 (94.05.25)	

#### 4)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학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m²)		최초결정일	비고
丁正	변호	7120	세분	귀시	기정	변경	변경 후	최소설생활	-17
기정	7	생초초등학교	초등학교	어서리 351번지 일원	12,877	-	12,877	산고 제1994-94호 (94.05.25)	
기정	8	생초중학교	중학교	어서리 417-1번지 일원	11,690	-	11,690	산고 제1994-94호 (94.05.25)	
기정	9	생초고등학교	고등학교	어서리 413번지 일원	11,261	-	11,261	산고 제1994-94호 (94.05.25)	

#### ②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²)			최초결정일	비고
丁正	표시번호			71/1	기정	변경	변경 후	의소설/8월	미끄
기정	1	공공청사	_	어서리 293-2번지 일원	2,753	_	2,753	산고 제1994-94호 (94.05.25)	생초면 사무소
변경	2	공공청사	_	어서리 341-1번지 일원	760	감) 14	746	산고 제1994-94호 (94.05.25)	우체국
기정	3	공공청사	_	어서리 323-1번지 일원	1,234	-	1,234	산고 제1994-94호 (94.05.25)	보건지소
기정	4	공공청사	-	어서리 245 번지 일원	483	_	483	산고 제1994-94호 (94.05.25)	파출소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공공청사	○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변경 - A=760㎡→746㎡	○공공청사 조성현황 및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공공청사 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구'	번호	위치			비고	
		취시 	기정	변경	변경후	
I	-	소 계	135,991	-	135,991	
(주거용지)	1	어서리 산20 일원	7,578	_	7,578	

			<b>획</b> 지			
가구	건호	위치		면적(m²)		비고
		기간	기정	변경	변경후	
	2	-	-	-	-	
	3	어서리 564-2 일원	8,497	-	8,497	
	4	어서리 549 일원	778	-	778	
	5	어서리 527 일원	9,188	-	9,188	
	7	어서리 500-4 일원	5,273	-	5,273	
	8	어서리 502 일원	3,485	-	3,485	
	9	어서리 459 일원	5,418	-	5,418	
	10	어서리 491-2 일원	5,487	-	5,487	
	11	어서리 484-1 일원	5,499	=	5,499	
	12	어서리 434 일원	8,634	-	8,634	
I	13	어서리 448-2 일원	1,193	-	1,193	
(주거용지)	14	어서리 472 일원	12,291	-	12,291	
	15	-	-	-	-	
	16	어서리 370 일원	6,454	-	6,454	
	17	어서리 302-1 일원	10,638	-	10,638	
	18	어서리 328 일원	11,890	-	11,890	
	19	어서리 296-2 일원	26,727	-	26,727	
-	20	-	-	-	-	
	24	어서리 766-1 일원	3,330	-	3,330	
	25	어서리 288-2 일원	896	-	896	
	26	어서리 276-3 일원	1,112	-	1,112	
	27	어서리 284 일원	1,623	-	1,623	
	-	소 계	29,522	-	29,522	
	1	어서리 305 일원	2,461	-	2,461	
	2	어서리 318-4 일원	2,424	-	2,424	
Ⅱ (상업용지)	3	어서리 267-1 일원	5,030	-	5,030	
(оно/1)	4	어서리 254 일원	11,018	-	11,018	
	5	어서리 278-5 일원	5,958	-	5,958	
	6	어서리 787-2 일원	2,631	-	2,631	
	-	소 계	32,401	-	32,401	
	1	-	-	-	-	
Ⅲ (녹지용지)	2	-	-	-	-	
17/10/1/	3	=	-	-	-	
	4	어서리 778 일원	32,401	-	32,401	

제2616호

2023. 6. 8.(목)

가구'	번호	0) =1		면적(m')		비고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	소 계	68,882	-	68,882	
	1	어서리 351 일원	12,877	-	12,877	생초초등학교
(공공시설용지)	2	어서리 417-1 일원	11,690	-	11,690	생초중학교
100 120 17	3	어서리 413 일원	11,261	_	11,261	생초고등학교
	4	어서리 273-1 일원	33,054	_	33,054	도로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 표시번호		구분	계획내용					
		지정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4 및 산청군계획조례 별표3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의 용도					
I -1		건폐율	60%					
~		용적률	150%					
I -27 (주거용지)		높이	4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용도	지정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7 및 산청군계획조례 별표6의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외한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20 및 산청군계획조례 별표19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					
		불허용도	ㅇ지정용도 외의 용도					
∏-1 ~	건폐율		60%					
Ⅱ-6 (상업용지)		용적률	150%					
(장협용시)		높이	4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Ш 1		지정용도	o 녹지용도					
Ⅲ-1 ~	용도	권장용도	-					
Ⅲ-4 (녹지용지)		불허용도	o지정용도 외의 용도					
(1:10:1/		건폐율						

제2616호

2023. 6. 8.(목)

도면 표시번호		구분	계획내용
		용적률	
		높이	
Ⅲ-1 ~		배치	-
Ⅲ-4 (녹지용지)		형태	-
(5/16/1)		색채	-
		건축선	-
		지정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4 및 산청군계획조례 별표3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불허용도	ㅇ지정용도 외의 용도
IV-1		건폐율	60%
~ IV−3		용적률	150%
(공공시설 용지)		높이	4층이하
중시)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 ● 함양군 고시 제2023-106호

# 화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9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079-52번지 일원의 "화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9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8일

#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079-52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종 류	사 업 명	사 업 량	비고
시설명	시설의 세분	ा भ उ	ਾ ਜ਼ਿਲਾ 	미끄
도로	소로2-5 소로3-19	화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3-19호선) 개설공사	도로개설 L=70.0m, B=6.0~8.0m	

####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안전도시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4 12. 31.

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

6. 행정사항: 타법률에 정한 사항 또는 의제된 사항에 대하여 부여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추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임1>

O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조서

- 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m²)	소 -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종류	비고
빈오	조세시	시 번	- 1 -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용	미끄
	총 계 (15필지)			967	462						
1	수동면 화산리	1079-52	전	43	24	함양군					
2	수동면 화산리	1079-55	전	26	26	함양군					
3	수동면 화산리	1079-4	도	438	167	함양군					
4	수동면 화산리	1079-50	전	10	7	함양군					
5	수동면 화산리	1079-46	전	11	11	함양군					
6	수동면 화산리	1079-49	전	9	3	함양군					
7	수동면 화산리	1079-45	전	11	5	함양군					
8	수동면 화산리	1079-40	도	74	40	함양군					

번호 소재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m^2)$	소 -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종류	비고
	그세시	시 원	시도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용	
9	수동면 화산리	1079-54	전	14	14	함양군					
10	수동면 화산리	1079-48	대	6	5	함양군					
11	수동면 화산리	1079-42	전	5	3	함양군					
12	수동면 화산리	1078-15	전	31	30	함양군					
13	수동면 화산리	1355-4	도	180	19	국토교통 부					
14	수동면 화산리	1094-45	대	49	49	함양군					
15	수동면 화산리	1094-18	대	60	59	함양군					

위 치 도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5.25.)의결을 거친 경상남도교육 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①

#### 2023년 6월 8일

#### ◉ 경상남도 조례 제5400호

####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경상남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학교의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역사·문화·교육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 2. "학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교육사의 정립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념사업을 학생과 경상남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① 학교장은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발전시키고 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함 수 있다.
  - 1. 학교 100년사, 역사서 등의 자료 발간
  - 2.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각종 기념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 3. 그 밖에 학교장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학교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업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교육감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제2616호

2023. 6. 8.(목)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 이유 ◇

가. 도내 학교에서 추진하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100주년 의미를 되새기고 학생 및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경남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 내용 ◇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경상남도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5.25.)의결을 거친 경상남도교육 청 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①

2023년 6월 8일

# ◉ 경상남도 조례 제5401호

####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 등교육법」 제2조의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교육기관의"를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때에"를 "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 심의를 한 후"를 "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정보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보화"를 "교육부의 교육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 부서장에게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 사업 부서장은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책임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 부서장에게 소관 업무별 시행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 사업 부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소관 업무별 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교육정보과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장,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 ⑧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제4항 중 "전문가로부터"를 "전문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협의 한"을 "협의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를 "회의 결과를 바로"로 한다.

제11조 중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수당·여비 등을"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정보과장"을 "창의인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획 득·배분·이용 등의 종합 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를 "통합 구축·운영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정보문화의 창달"을 "건전한 정보문화의 발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스템간"을 "시스템 간"으로, "보안"을 "보호"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시행교육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 이유 ◇

- 가.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 나.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본청 교육정보과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 보원 폐지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 주요 내용 ◇

- 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명 개정(안 제2조 등)
- 나.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시기(5년→3년) 변경 (안 제6조)
- 다. 경상남도교육청 2023.3.1.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 구성 사항 변경 및 위원 해촉 사유 추가(안 제9조)
- 라.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변경(안 제12조)
  - 교육정보과장 → 창의인재과장
- 마. 정보시스템 감리, 지식정보 자원의 관리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6조)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5. 25.)의결을 거친 경상남도교육 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①

#### 2023년 6월 8일

# ◉ 경상남도 조례 제5402호

#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분원으로 미숭산교직원휴양원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② 종합복지관 및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 1. 종합복지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회진로 296
- 2. 미숭산교직원휴양원: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하빈리 111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원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1조제3호 중 "종합복지관"을 "종합복지관 및 분원"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의 위치란 중 "함안대로 495"를 "선왕길 16"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 명칭과 위치(제5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경상남도교육청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12길 24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삼진의거대로 661-94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588번길 24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통영시 봉수로 37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도서관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622
경상남도교육청 사천도서관	사천시 사천읍 평화2길 21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541번길 8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265번길 9-61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밀양시 삼랑진읍 만어로 7
경상남도교육청 하남도서관	밀양시 하남읍 수산중앙로 63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거제시 계룡로7길 2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양산시 물금읍 신주2길 24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25길 9-8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16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창녕군 창녕읍 남창녕로 52
경상남도교육청 남지도서관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437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95번길 6
경상남도교육청 남해도서관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43번길 11-3
경상남도교육청 하동도서관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80
경상남도교육청 산청도서관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79번길 45
경상남도교육청 산청지리산도서관	산청군 신안면 원지강변로 101
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143-1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거창군 거창읍 하동1길 9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52

#### ◇ 개정 이유 ◇

- 가. '미숭산교직원휴양원'설립에 따른 직제 반영
- 나. '함안도서관'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 ◇ 주요 내용 ◇

- 가. 미숭산교직원휴양원'설립에 따른 직제 반영
  -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분원 설치
  - 기관설치 근거, 명칭, 위치 분원장 및 직무 규정(안 제14절 제49조~제51조)
- 나. '함안도서관'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안 제4장 제1절 제52조(별표1))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5.25.)의결을 거친 경상남도교육 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①

2023년 6월 8일

# ◉ 경상남도 조례 제5403호

#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시설사용료 징수액 (제4조 관련)

#### 1. 강당 등 전용사용료

기 관 명	시설명	주	간	o}	간	징 수 특 례
71 12 78	시설정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78 구 즉 데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중강당	100,000원	150,000원	150,000원	200,000원	
70.00日正正年20 미네正年刊	대강당	200,000원	300,000원	300,000원	400,000원	   1. 유료입장인 경우 수입액의 10%를 추가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강당					징수한다. 2. 냉·난방 및 방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강당					우 실비를 추가 징수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강당	100,000원	150,000원	150,000원	200,000원	3. 주간 전용자가 야간까지 계속 사용할 경    우 1시간당 야간 기본액의 20%를 징수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체육관	체육관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진주학생수영장	수영장					

<sup>\*\*</sup> 주간은  $08:00 \sim 17:00$ 로, 야간은  $17:00 \sim 22:00$ 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2. 체육관 및 수영장 공동사용료

기 관 명	시설명	기 준	금 액	비고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체육관	체육관	개인연습 2시간	500원	단체(15명이상) 입장할 경우에는 20%를 할인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진주학생수영장	수영장	고등학생 이하	1,000원	입장할 때마다 징수
○ 10 日工业年份 位于号 10 T 3 G	T 3/3	일반인	2,000원	16일 베타다 경구

#### 3. 회의실 등 사용료

기 관 명	시 설 명	기 준	주 간	야 간	비고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연 수 실			20,000원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세미나실		15,000원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시청각실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회 의 실	시간당			
거시나트그 이 차 조하보기 제	세미나실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다목적실				
경상남도교육청 하동학생야영수련원	회 의 실				

# 4. 숙박비

기 관 명	숙 박 비		비고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숙박정원 10명 미만	1일당 25,000원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숙박정원 10명 이상 20명 미만	1일당 50,000원	   냉·난방시 1실당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	숙박정원 20명 이상 30명 미만	1일당 75,000원	10,000원 추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남해분원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야영수련원	숙박정원 30명 이상	1일당 100,000원	

기 관 명		숙 박 비						月	고		
경상남도교육청 하동학생야영수련원		생활실(32.4m²) 1일당 50,000원									
			생흑	활실(61.56)	m²)	1일당	70,000원				
		규모 정원		Tf V		교직원 (1박당)			공공기관 등 (1일당)		
			(명)	평시	성수기	평시	성수기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32 m²	2	25,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성성급조교육성 중합국시된		41 m²	4	30,000원	40,000원	40,000원	50,000원				
		63 m²	6	50,000원	60,000원	60,000원	70,000원				
		징수 성수		·장이 정호	는 (행사)기	기간					

<sup>※</sup> 숙박정원은「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기관장이 정한다.

# 5. 공동취사장 및 식당(다용도실)

기 관 명	기 준	금액	비고
	2시간까지	15,000원	
경상남도교육청 하동학생야영수련원	2시간초과 4시간이하	25,000원	기본시설 사용료 외에 추가되는 소요 경비(가스비 등) 별도 징수
	4시간초과	50,000원	

# 6. 삭제 <2020. 8. 13. 조4836>

# 7. 자료복사·출력수수료

기관명	구분	규 격	1매당(단면)	비고
	복사	A4 또는 B5	최대 60원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b>一</b>	A3 또는 B4	최대 80원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출력	A4 흑백	최대 60원	
		A4 컬러	최대 400원	

# ※ 세부 금액은 기관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8. 체험시설 및 휴양시설 사용료

기 관 명	시설명	주 중	주 말	이용자격	비고
경상남도교육청	방갈로	20,000원	30,000원		4인 기준
종합복지관 분원	카라반 사이트	10,000원	10,000원	교직원	81 m²
미숭산교직원휴양원	캠핑 데크	5,000원	5,000원		56 m²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산독서당정글북	북캠프 방갈로형 (20.54㎡)	20,000원	30,000원	학생을 동반한 학부모	1박2일과정
	북캠프 캠핑데크형 (28㎡)	5,000원	5,000원	및 교직원 연수에 한함	1억4번শ성

# 9. 입장료

		경상남도 .	외 입장료	경상남도	내 입장료	
기 관 명	대상	개인	단체 (20인이상)	개인	단체 (20인이상)	비 교
	7세~18세	4,000원	3,000원	3,000원	2,000원	
	19세 이상	5,000원	4,000원	4,000원	3,000원	1. 의령군민 입장료 면제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6세 이하, 65세 이상, 다자녀 및 다문화 가족	무료	무료	무료	무료	2. 특별 유료프로그램은   사전 접수 및 참가료   사전 공지

- ※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 ※ 다자녀가족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을 말한다.
- ※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다.

# [별표 2]

#### 사용료 면제 기준(제6조 관련)

기 관 명	면 제 기 준	비고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	• 경상남도내 초등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때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체육관	•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때 •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교육 관련 행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때 • 교육 유관 기관에서 행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로써 기관장이 사용을 허가한 때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 경상남도내 유치원 및 유치원관련 단체에서 교육활동 일환으로 이용하는 때 •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교육 관련 행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때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남해분원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야영수련원	• 경상남도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때 (단, 위탁운영 야영수련원은 제외한다) •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교육 관련 행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때	
경상남도교육청 진주학생수영장	•경상남도 우수 선수가 연습하는 때 •교육감 및 교육장이 주관하는 수영 강습회를 개최하는 때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교육 관련 행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때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교육 관련 행사를 위하여이용하는 때 • 교육 유관 기관에서 행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로써 관장이 사용을 허가한 때 •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단, 숙박비 제외	

#### ◇ 개정 이유 ◇

가. 2023년 개관 예정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사용료 징수, 면제 규정 신설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주요 내용 ◇

- 가. '미래교육원' 입장료, 강당·회의실 등 사용료에 관한 내용 규정(안 별표1)
- 나. '미숭산교직원휴양원' 사용료에 관한 내용 규정(안 별표1)
- 다. 그 외 자료 복사·출력 수수료 등 기존 사용료 징수, 면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안 별표1, 2)

#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373호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2023년 6월 8일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황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합천군수(경제교통과)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50번지 외 4필지 일원 면적 : 11,272㎡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연장사유 :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 점용목적 :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 ○ 시설개요 : - 활주로 및 안전구역 L=415m, B=20.0m - 진입로 L=147m, B=10m
점 용 기 간	당초 : 2018년 6월 20일부터 2023년 6월 19일까지 변경 : 2023년 6월 20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